

韓·中 經濟協力 세미나

韓·中 經濟協力の 擴大方案

1994. 10

韓國經濟新聞社
(中國)經濟日報社
韓國租稅研究院

韓·中 經濟協力 세미나 / 目次

세미나의 概要 / 1

<第 1 主題>

稅制改革과 租稅

I. 中國稅制改革과 外國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政策(劉 佐) / 3

II. 韓國의 稅制改革과 外國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政策(南宮 鍾) / 19

<第 2 主題>

金融市場

I. 中國의 金融·證券市場의 實態와 展望(許惠斌) / 47

II. 韓國의 金融 및 證券市場 開放擴大와 對策(崔長鳳) / 59

세미나의 概要

- 10 : 30 ~ 10 : 35 開會辭 : 金鎮炫 會長(한국경제신문사)
- 10 : 35 ~ 10 : 40 祝 辭 : 金相廈 會長(대한상공회의소 및 한중민간경제협의회)
- 10 : 40 ~ 13 : 00 第1主題: 稅制改革과 租稅
- 司會 : 朴宗淇 院長(한국조세연구원)
- 論文 I : 中國稅制改革과 外國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政策
- 發表 : 劉 佐(Liu Zuo) 副主任(中國國家稅務總局 辦公室)
- 論文 II : 韓國의 稅制改革과 外國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政策
- 發表 : 南宮 鍾 稅制審議官I(재무부)
- 討 論 : 全周省 教授(이화여대)
- 白權鎬 博士(대외경제정책연구원)
- 韓相國 博士(한국조세연구원)
- 13 : 00 ~ 14 : 30 中 食
- 14 : 30 ~ 16 : 50 第2主題 : 金融市場
- 司會 : 金世源 教授(서울대)
- 論文 I : 中國의 金融·證券市場의 實態와 展望
- 發表 : 許惠斌(Xu Hui-bin) 副主任(中國 人民建設銀行 資金部)
- 論文 II : 韓國의 金融 및 證券市場 開放擴大와 對策
- 發表 : 崔長鳳 博士(한국조세연구원)
- 討 論 : 李天杓 教授(서울대)
- 李漢久 所長(대우경제연구소)
- 梁奉鎭 經濟部長待遇(한국경제신문사)

中國의 工商稅制改革

劉 佐(Liu Zuo)

(中國國家稅務總局 辦公室 副主任)

目 次

1. 改革以前的 中國 工商稅制的 狀況과 改革的 必要性	7
2. 稅制改革的 指導理念 및 基本原則	9
3. 稅制改革的 主要內容	10
가. 流通稅制的 改革	10
(1) 增值稅	11
(2) 消費稅	12
(3) 營業稅	12
나. 所得稅制的 改革	13
(1) 企業所得稅	13
(2) 個人所得稅	13
다. 其他稅目的 改革	14
(1) 資源稅	14
(2) 土地增值稅	15
(3) 其他稅目的 調整	15
4. 稅制改革的 實施狀況	16

중국의 工商稅制 시행방안이 國務院의 비준을 거쳐 199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국의 이번 세제개혁은 1949년 이후 규모가 가장 크고 범위도 가장 광범위하며 내용도 가장 깊이 있는 세제개혁이었다. 이번 개혁의 추진은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수립의 필요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서, 중국경제의 발전과 개혁의 심화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中共中央과 國務院에서 각지역·각부문 및 각업종에 이르기까지 이번 개혁을 모두 중시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 改革以前的 中國 工商稅制의 狀況과 改革의 必要性

1994년 이전 中國 工商稅制의 기본구조는 1984년 전면적인 세제개혁시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세제에는 32가지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성질과 작용에 의하여 6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 (1) 流通稅類: 商品稅(產品稅)·增值稅(附加價值稅) 및 營業稅를 포함한다. 이들 세목은 주로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입 또는 영업수입에 대해서 부과한다.
- (2) 資源稅類: 資源稅·鹽稅 및 都市土地使用稅를 포함한다. 이들 세목은 주로 남세자의 국유천연자원의 개발과 이용시 자원의 차이에 의해서 형성된 등급별 수입에 대하여 조절작용을 한다.
- (3) 所得稅類: 國營企業所得稅·國營企業調節稅·集體企業所得稅·私營企業所得稅·農村個體工商戶所得稅와 個人所得調節稅를 포함한다. 이러한 세목은 생산경영자의 이윤 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 (4) 特定 目的稅類: 國營企業賞與金稅(國營企業獎金稅)·集體企業賞與金稅(集體企業獎金稅)·事業單位賞與金稅(事業單位獎金稅)·國營企業賃金調節稅(國營企業工資調節稅)·固定資產投資方向調節稅·都市保護建設稅(城市維護建設稅)·油類稅(燒油特別稅)·宴會稅(筵席稅) 및 特別消費稅를 포함한다. 이들 세목은 특정목적의

성취를 위해 특정대상 또는 특정행위에 대하여 조절작용을 한다.

- (5) 財産 및 行爲稅類: 家屋稅(房產稅)·車輛 및 船舶使用稅(車船使用稅)·印紙稅(印花稅)·屠畜稅(屠宰稅)·定期市場去來稅(集市交易稅) 및 家畜去來稅(牧畜交易稅)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세목은 주로 특정재산 또는 행위에 대하여 조절작용을 한다.
- (6) 對外關聯 稅類: 外國投資企業과 外國企業所得稅·個人所得稅·工商統一稅·都市不動產稅(城市房產稅) 및 車輛과 船舶 使用免許稅(車船使用牌照稅)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세목은 주로 외국투자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中外合作經營企業 및 外國獨自經營企業), 외국기업(이후에는 外資企業으로 약칭함) 또는 외국국적 개인에게 부과한다.

이러한 세제는 여러부문과 여러계층에 과세하는 복합세제로서 중국 전통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통합징수 및 통합지출에 따른 분배방식을 벗어나 세수조직·재정수입 및 거시조절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경제발전과 경제체제개혁의 필요성에 부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는 여전히 불완전한 면이 있으며, 특히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발전이라는 요구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국가·기업 및 개인의 분배관계 및 중앙과 지방의 분배관계면에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조절작용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1) 조세부담이 공평치 않아 기업의 평등경쟁에 불리하다. 예를들어 기업소득세를 각종 소유제에 따라 각기 다른 세목을 적용하여 세율의 불일치·우대조치의 상이 및 지역간의 정책차이 등이 존재한다. 또한 유통세 세율은 계획가격을 위주로 하는 조건하에서 가격불합리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지만 등급이 지나치게 많고 고저간 격차가 심하여 가격이 대부분 개방된(가격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는 이미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 (2) 국가와 기업의 분배관계가 규범화되지 못하였다. 일련의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기업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다양한 우대정책 또

한 제정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기업의 주무부서 역시 각종 구실을 붙여 각종 수입을 방대하게 취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총체적 부담이 가중 되었다.

- (3) 중앙과 지방간 세수수입과 세수관리권한의 분할이 철저한 분세제(分稅制)의 시행과는 거리가 있었다.
- (4) 세수조정 범위와 정도가 생산요소의 전면적인 시장진입이라는 요청과는 거리가 있었다.
- (5)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등 內資企業과 外資企業에게 두가지 세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모순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 (6) 稅收法制體系가 건전하지 못하였고 세수의 입법·사법 및 집행법률의 상호독립 및 상호제약의 메카니즘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신·구체제의 교체시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발전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세계개혁의 심화는 필요한 것이며 또한 매우 시급한 것이기도 하다.

2. 稅制改革의 指導理念 및 基本原則

이번 세계개혁의 지도이념은 세법의 통일·공평한 부담·세제의 간소화·합리적인 분권·분배관계의 합리화 및 재정수입의 보장을 통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청에 부합하는 조세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개혁이 목표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고취하고 중앙의 거시조정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세제구조의 조정·세목의 합리적인 분류 및 세율의 확정을 통하여 分稅制의 실시와 중앙과 지방간의 분배관계 정립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세계개혁을 통하여 세수수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여 중앙재정수입과 지방재정수입이 분배비율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 (2) 세수가 개인수입과 지역간 경제발전에 대한 조절작용을 발휘하도록 하여 경제와 사회의 협조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공동의 부의 실현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 (3) 공평한 조세부담의 실현과 평등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종 소유제와 각지역마다 다른 세목과 세율의 문제를 점차 해결하고, 통일된 企業所得稅와 완전한 流通稅를 통하여 각종기업의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해서 기업이 시장에서 평등경쟁을 하도록 하는 조건의 창조에 있다.
- (4) 국가산업정책의 실현과 경제구조조정의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도 빠르게 건강한 발전과 전체적인 효율성의 향상을 촉진하는데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 (5) 세목의 간소화 및 규범화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세목을 취소하고, 중복된 세목을 통폐합하고, 일련의 필요한 세목을 징수하여 세제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실현한다. 국제관례를 참고하고 최대한 규범화된 세수방식을 채택하여 세제의 완비를 모색하고 세법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3. 稅制改革의 主要内容

가. 流通稅制의 改革

개혁이전의 流通稅制의 구조는 대부분의 공업생산지역에서 增值稅를 징수하고, 소수의 공산품(예를들어 담배, 술, 전기, 휘발유, 화공상품 등)에 대하여 商品稅을 징수하며, 營業稅는 주로 상업과 기타 제3차산업에 대하여 징수했다.

개혁이후의 流通稅制는 增值稅(附加價值稅), 消費稅 및 營業稅으로 구성되어, 공업과 상업영역에서 보편적으로 增值稅(附加價值稅)를 징수했다. 商品稅(產品稅)을 취소하고 소량의 소비품에 대하여 消費稅를 징수하며, 增值稅를 시행하지 않은 노동 및 부동산 매매 등에 대하여 營業稅을 징수했다.

새로운 流通稅制는 內資企業과 外資企業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동시에 外資企業에 대해서 징수하던 工商統一稅를 취소하였다.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보증과 조세정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받아서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에 부과되는 개정된 增値稅·消費稅 및 營業稅額이 세계개혁 이전의 세액과 비교하여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반환하여 주기로 결정하였다. 시한은 비준된 영업기간을 한도로 하되 최장 5년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1) 增値稅(附加價値稅)

- ① 과세범위 : 상품의 생산·도매·소매 및 물품의 수입을 포함하되 대부분의 노동에 대해서는 增値稅를 일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다.
- ② 세율 : 基本稅率에 低稅率과 零稅率을 추가 적용하는 방법(원세율은 8%에서 45%까지 12등급이 있었음)을 취한다. 원래의 법정조세부담을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基本稅率은 17%로 하고 低稅率은 13%로 한다. 적용범위는 농산물, 광산물, 식용식물류, 수도, 가스, 도서, 신문과 농업생산자재 등이며,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零稅率을 적용한다. 年間 매출액이 적은 경우와 회계계산이 불완전한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매출수입전액과 규정된 부과율(6%)에 따라 增値稅를 부과하는 간편한 방법을 시행한다.
- ③ 계산 및 징수방법 : 가격외의 계산 및 징수의 경우 영수증에 근거하여 세금을 제한한다. 즉 增値稅를 포함하지 않은 상품가격과 규정된 세율에 의해서 增値稅額을 계산하고, 앞단계에서 이미 增値稅를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증에 나타난 세금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소매 이전의 각 단계에서 상품을 매출하는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영수증에 각기 增値稅額과 增値稅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상품의 소매단계에서는 가격에서 增値稅를 납세하며, 영수증상에 세액을 단독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 ④ 납세제도 : 增値稅의 납세의무자는 전문적인 세무등기를 하고 增値稅 영수증을 사용한다. 납세자에 대하여 구입자와 판매자 쌍방이 교차적으로 심의하는

검사체계·조세의 탈루방지 및 조세의 감면을 규제할 수 있는 내적메카니즘을 수립한다.

(2) 消費稅

국가의 재정수입을 보장하고 원래의 조세부담을 기본적으로 유지한다는 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동시에 일부 소비재에 시행하는 특수조절을 고려하기 위한 소수 소비재에 增値稅를 징수하고 다시 소비세를 징수한다. 소비세 과세품목에는 11가지가 있다. 주요한 것에는 담배, 술, 화장품, 귀중품 장식, 휘발유, 오토바이, 소형차 등이 있다. 소비세는 종량정액(從量定額; 종량세)과 종가정율(從價定率; 종가세)의 두가지 징수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종가정율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소비재의 가격과 규정세율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3%(실린더 용량이 1,000cc미만인 소형승용차)에서 45%(甲류 췌련)까지 다양하다. 종량정액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매출량과 단위세액에 따라 부과(휘발유의 경우 1ℓ 당 0.2원을 부과함)한다.

(3) 營業稅

營業稅의 과세범위는 노동의 제공·무형자산의 양도와 부동산 판매를 포함한다. 업종별 세율을 보면, 교통운수업·건축업·우편통신업 및 문화체육업 등의 세율은 3%이다. 금융보험업·서비스업·무형자산양도 및 부동산판매 등의 세율은 5%이다. 오락업의 세율은 5% 내지 20% (성급 지방정부가 현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확정함)이다. 上述한 영업·양도 및 판매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은 그 영업액(양도 및 판매 수입)과 규정된 세율에 따라 營業稅을 계산·납부한다.

1993년 12월 13일 국무원은 <中華人民共和國 增値稅暫行(暫定)條例>, <中華人民共和國 消費稅暫行(暫定)條例> 및 <中華人民共和國 營業稅暫行(暫定)條例>를 반포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과거 시행했던 增値稅·商品稅·營業稅 및 工商統一條例(草案)와 特別消費稅의 징수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되었다.

나. 所得稅制의 改革

(1) 企業所得稅

개혁전의 企業所得稅制의 구조는 기업소유형태에 따라 國營企業所得稅·國營企業調節稅·集體企業所得稅·私營企業所得稅 및 外國投資企業과 外國企業所得稅가 각각 부과되었다. 이번 개혁은 주로 內資企業所得稅의 통일에 중점을 두었다. 개혁의 목표는 국가와 기업간의 분배관계를 조정하고 규범화해서 기업경영메카니즘의 전환을 촉진하고 공평경쟁을 실현하는 것이다. 개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1994년 1월 1일부터 각종 內資企業에 대해서 통일된 企業所得稅를 부과한다.
- ② 33%의 비례세율(원래의 최고세율은 55%)을 적용한다. 일부기업의 이익수준이 낮은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과도기적인 방법을 시행하되, 27%와 17%의 2등급의 우대세율을 둔다.
- ③ 세수기반이 안정화되고 확대되었다.
- ④ 國營企業調節稅가 취소되었다.

1993년 12월 13일 國務院은 모든 內資企業에게 적용되는 <中華人民共和國 企業所得稅暫行(暫定)條例>를 발표했으며,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과거에 시행하였던 國營企業所得稅·國營企業調節稅·集體企業所得稅와 私營企業所得稅의 관련 법규를 폐지했다.

(2) 個人所得稅

<中華人民共和國 個人所得稅法>의 수정법안은 1993년 10월 31일 제8기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심의로 통과되었다. 수정된 個人所得稅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동시에 과거에 시행되었던 個體工商戶所得稅와 個人收入調節稅의 두가지 잠정조례가 폐지되었다.

個人所得稅 개혁의 기본원칙은 개인수입의 차이를 조절하고 사회의 분배구조가 불평등하다는 모순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과대상은 주로 고소득자이며 중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적게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는다. 개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원래의 個人所得稅·個人收入調節稅 및 都農個體工商戶所得稅를 새로운 個人所得稅로 통일한다.
- ② 기본생활비용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국제관례에 따라 임금과 급여소득의 월공제액은 800원으로 확정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면을 규정하였다.
- ③ 과세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조정을 가하였는 바, 주로 個體工商戶의 생산·경영소득·재산양도소득 및 우연한 소득을 추가한 것이다.
- ④ 중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고 개도국 및 주변국가의 상황을 참고하여 세율을 확정하였다. 그 중 임금 및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5%에서 45%까지의 9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個體工商戶의 생산 및 경영소득에 대해서는 5%에서 35%까지의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원고료소득·노무보상소득·특허권사용소득·이자·주식배당·상여금소득·재산임대소득·재산양도소득·우연한 소득 및 기타소득은 공히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다. 其他稅目の改革

(1) 資源稅

개혁이전 資源稅는 단지 일부 자원상품과 일부 자원채굴기업에 대해 부과하였으며, 과세범위가 좁고 조세부담도 대단히 낮았다. 개혁 이후 資源稅의 과세범위는 모든 광산자원을 포함하며, 과세품목에는 원유·천연가스·석탄·기타 비금속원광·흑색금속원광·유색금속원광 및 소금이 있다. 동시에 增值稅의 개혁에 따라서 資源稅의 세부담을 적절히 조정하였다.

資源稅는 상품의 구분에 다른 종량정액에 따른 계산 및 징수방법을 시행하며, 상한 및 하한 세액을 각각 설정한다. 동일한 종류의 자원이라도 채굴조건이 다른 경우 세액은 같지 않다. 예를들어 원유의 톤당세액은 8원~30원이고 석탄의 톤당세액은 0.3원~5원이다.

1993년 12월 25일 국무원은 <中華人民共和國 資源稅暫行(暫定)條例>를 반포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과거에 시행하였던 資源稅와 鹽稅條例(草案) 및 관련규정을 폐지했다.

(2) 土地增値稅

土地增値稅를 부과하는 목적은 부동산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윤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다. 土地增値稅은 부동산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수입의 가치증가부분에 대하여 부과한다. 不動產 增値額이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한 수입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의 나머지 액수를 말한다. 공제항목으로는 주로 토지사용권 취득시에 지불한 가격·토지개발원가와 비용·신축건물과 부대시설의 원가 및 비용, 판매세금 등이다. 土地增値稅에 대해서는 4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30%에서 60%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1993년 12월 31일 국무원은 <中華人民共和國 土地增値稅暫行(暫定)條例>를 반포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實施細則은 현재 제정중)

(3) 其他稅目的 調整

첫째 定期市場交易稅·家畜交易稅·油類特別稅·賞金稅 및 賃金調節稅를 취소했다. 둘째 特別消費稅를 消費稅에 편입하고, 鹽稅를 資源稅에 편입했다. 셋째 屠畜稅 및 宴會稅의 관리권을 省級 지방정부에 이양했다. 이후에는 都市保護建設稅·都市土地使用稅를 적당한 시기에 개혁하고, 都市不動產稅와 車輛 및 船舶使用免許稅를 각각 家屋稅와 車輛 및 船舶使用稅에 편입하며, 證券交易稅·遺產 및 贈與稅를 징수한다.

개혁을 거쳐 현재 중국의 工商稅制中の 세목은 이미 원래의 32세목에서 20세목(원래의 32세목중 17세목은 취소되었고 15세목은 계속 유효하며 5세목은 신설되었음)으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세목은 그 성질과 작용에 따라 다음의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 ① 流通稅類에는 增值稅·消費稅 및 營業稅 등 3가지가 포함된다. 이러한 세목은 생산과 유통영역에서의 판매수입 또는 영업수입에 부과된다.
- ② 資源稅類에는 資源稅과 土地使用稅등 두가지 세목이 포함된다. 이러한 세목은 자원개발 종사자와 도시토지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취득하는 자원의 등급별 수입을 조절할 수 있다.
- ③ 所得稅類는 國有企業·集體企業·私營企業·聯營企業 및 株式制企業 등 각종 내자기업에 적용되는 企業所得稅와 外國投資企業과 外國企業에 적용되는 企業所得稅 그리고 個人所得稅의 3가지의 세목을 포함한다. 이러한 세목은 생산경영자의 이윤 또는 개인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 ④ 特定 目的稅類는 固定資產投資方向調節稅·都市保護建設稅 및 土地增值稅 등 3가지 세목을 포함한다. 이러한 세목은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 ⑤ 財產 및 行爲稅類는 家屋稅·都市不動產稅·車輛 및 船舶使用稅·車輛 및 船舶使用免許稅·遺產稅·印紙稅·證券交易稅·屠畜稅 그리고 宴會稅 등 9가지 세목을 포함한다.

4. 稅制改革的 實施狀況

國務院과 各級 地方政府의 기대·각 相關부문의 협조·납세자와 사회각계의 적극적인 호응 및 전국세무요원의 노력으로 인해서 중국의 신규세제는 지난 7개월 동안 매우 순조롭고도 정상적으로 실행되어 신·구세제간의 안정적인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가지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세제가 기본적으로 정착되어 각종 신규세수법률·법규 및 규칙이 이미 집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세수징수관리제도 또한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다. 신규세제는 총체적으로 원래의 세수부담을 유지하므로 기업의 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물가 파동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대외개방에도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대해서도 불리한 영향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 신규세제의 실시중에 나타난 일련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國務院·財政部 및 國家稅務總局은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처리를 취하였다. 사회 각계각층과 대다수 기업의 신규세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있으며, 반응도 양호하여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세수의 안정적인 증대를 유지하고 있다.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工商稅收入累計는 2,232억원(人民幣)으로서 전년동기대비 34.1%가 증가하였다. 그 중 중앙급의 수입이 31.8%가 늘어났고 지방급의 수입이 37.2%가 늘어났다. 세수의 증대와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세계개혁후 세수로 인해서 재정수입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법에 따른 납세환경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통일적이고 규범화된 세수법률 및 법규가 시행되면서 엄격한 세수관리권한이 명확해졌으며, 과거 일부 지방에 존재하고 있던 자의적인 입법(自立章法) 및 월권적인 감면이라는 혼란한 현상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동시에 신규세제 특히 증치세의 영수증에 근거한 세액공제제도의 시행은 세금의 탈루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세수의 거시조정작용이 나날이 분명해지고 있다. 신규세제는 상품간·기업간·업종간 및 지역간의 세수부담의 공평화와 합리화에 기여하였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기업의 분배관계를 원활히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기업의 경영메카니즘의 전환과 시장경제의 본궤도에 진입하는데 기여하였다. 신규세제의 실시과정에서 국가의 산업정책이 점차 실현되어 가고 있다.

상술한 상황은 중국정부의 세계개혁정책이 대단히 정확하고 적기에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신규세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있어 이미 적극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韓國의 稅制改革과
外國人投資家企業에 대한 租稅政策

南宮 鏞

(財務部 稅制審議官)

目 次

I. '94 稅制改革的 基本方向	23
II. 外國人投資家에 대한 租稅減免制度 沿革	24
III. 外國人投資家企業에 대한 稅制支援의 內容	27
1. 外國人投資家企業의 事業所得에 대한 租稅減免	29
2. 外國投資家の 配當所得에 대한 所得稅·法人稅 減免	30
3. 關稅·特別消費稅·附加價值稅의 減免	31
4. 取得稅·財產稅·綜合土地稅의 減免	31
5. 技術導入契約에 의한 技術導入對價의 免稅	31
6. 看做稅額控除制度	32
IV. 外國人投資家企業에 대한 向後 租稅政策 方向	34
1. 外國人投資家 活性化를 위하여 考慮하여야 할 要素	34
2. 外資導入法上 租稅支援制度의 擴大	36
3. 企業課稅制度의 全般的 改編 推進	37
4. 稅務行政서비스의 改善	39
V. 結論	41

I. '94 稅制改革의 基本方向

한국의 '94 稅制改革의 基本방향은 금융실명제의 실시, WTO 체제의 출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부담의 형평 증진, 기업의 경쟁력 제고, 장기적인 세입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른 '94년도 세법개정 의 特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1)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그 기반이 마련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96년부터 실시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한다. (2) 소득세의 과세 방식을 현행 정부부과제도로부터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성실신고 풍토를 조성한다.

둘째, 과세베이스가 넓어짐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등의 세율을 인하한다. (1)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각종 공제제도를 통합 정비하고 공제수준을 높여 전반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자료 양성화를 유도한다. (2)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한다.

세째, WTO 체제의 출범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과세제도를 국제화 시대에 맞게 개편한다. (1)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한다. 내용연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내용연수분류를 단순화하며 잔존가액제도를 폐지한다. (2) 계속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내에서는 세무회계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한다.

네째, 세제를 간소화·단순화하여 납세자의 납세비용과 행정부담을 축소한다. (1) 투기억제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집행상의 문제점이 축소될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율체계와 공제제도를 조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과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2) 상속·증여세의 세율수준을 단일화하고 배우자 공제범위등을 확대한다.

다섯째, 사회간접자본확충, 환경·교육재정투자 등 재정의 기능과 역할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율을 적정수준으로 높여나간다.

II. 外國人投資家에 대한 租稅減免制度 沿革

1. 1950 - 1960年代

1950년대의 외자도입은 원조자금의 수증형식으로 무상공여되었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 무상원조자금의 점진적 축소로 개발계획의 수행에 소요되는 외환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자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60년 『外資導入促進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외자도입에 관한 최초의 법률인 『外資導入促進法』에서는 外國人投資家が·대주 및 기술제공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정부는 외자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962년 7월에 『借款에 대한 支拂保證에 관한 法律』과 『長期決濟方式에 의한 資本財導入에 관한 特別措置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차관자금이나 자본재 도입 등에 대한 지원 내용에도 비중을 두기 시작하였다. 외자도입에 관련된 위의 세가지 법률은 1966년 제정된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통합되었다.

2. 1970 - 1980年代

정부는 1973년 외자도입법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공공차관의 효율적 유치 및 활용을 위하여 『公共借款의 導入 및 管理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조세지원제도는 외국의 기술 및 자본도입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장기저리의 공공차관 도입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1983년 12월 법개정시 외자의 도입주체 또는 자금의 성질에 따라 외자도입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외자관리법으로 구분되어 있는 법체계를 정비하여 외자도입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외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외거래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외자도입법의 주요개정목적은 外國人投資家の 문호를 확대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자유화함으로써, 경제의 개방화와 자

유경쟁체제를 유도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같이 외자도입 및 관리에 관한 이들 법률이 1984년 7월 1일부터 외자도입법으로 단일화됨으로써 외자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외자도입법과 외국환관리법으로 이원화되었으며, 외자에 관한 조세지원체계 역시 외자도입법과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이원화되었다.

종전 외자도입법에서는 外國人投資家에 대하여 업종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조세감면을 부여하였으나, 1983년 10월 31일 개정된 외자도입법에서는 外國人投資家에 대한 조세 특례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기업간·자본간 공정경쟁기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전 외자도입법이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업종에 대하여만 外國人投資家에 허용하는 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가된 外國人投資家에 대하여는 모두 조세감면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1983년에 개정된 외자도입법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화정책에 따른 문호개방으로 특정사업 이외에는 外國人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제도(negative list system)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조세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만 선별감면하도록 한 것이다.

3. 最近 動向 (1988-'94)

(1) 安定基盤 造成과 外資導入 適正化

이 시기에는 안정기반 조성과 외자도입 적정화에 조세 지원제도의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外國人投資家의 유치, 선진기술 및 외자의 도입촉진등을 위해 외자도입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세혜택을 부여하여 왔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외개방의 진전과 국제수지의 개선에 따라 내·외국기업간 공정한 경쟁관계를 정립하고 외자도입의 효율화를 위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비합리적인 조세감면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외자도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축소해 오고 있다.

(2) 租稅減免規制法の 減免規程 縮小

1988년에 조세감면규제법상의 外國人 및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크게 축소하였다. 外國人 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外國人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外國人 출자기업에 대한 재산세·취득세의 감면, 外國人 출자자에 의해 출자 목적으로 도입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국제금융기구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 외화표시어음이자에 대한 면세, 비거주자의 외화예수이자에 대한 면세, 외화자금의 알선, 중개소득에 대한 면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이자에 대한 면세, 시설대여료에 대한 면세 등의 조항이 '89.1.1 이후 폐지되었다.

(3) 外資導入法の 減免規程 縮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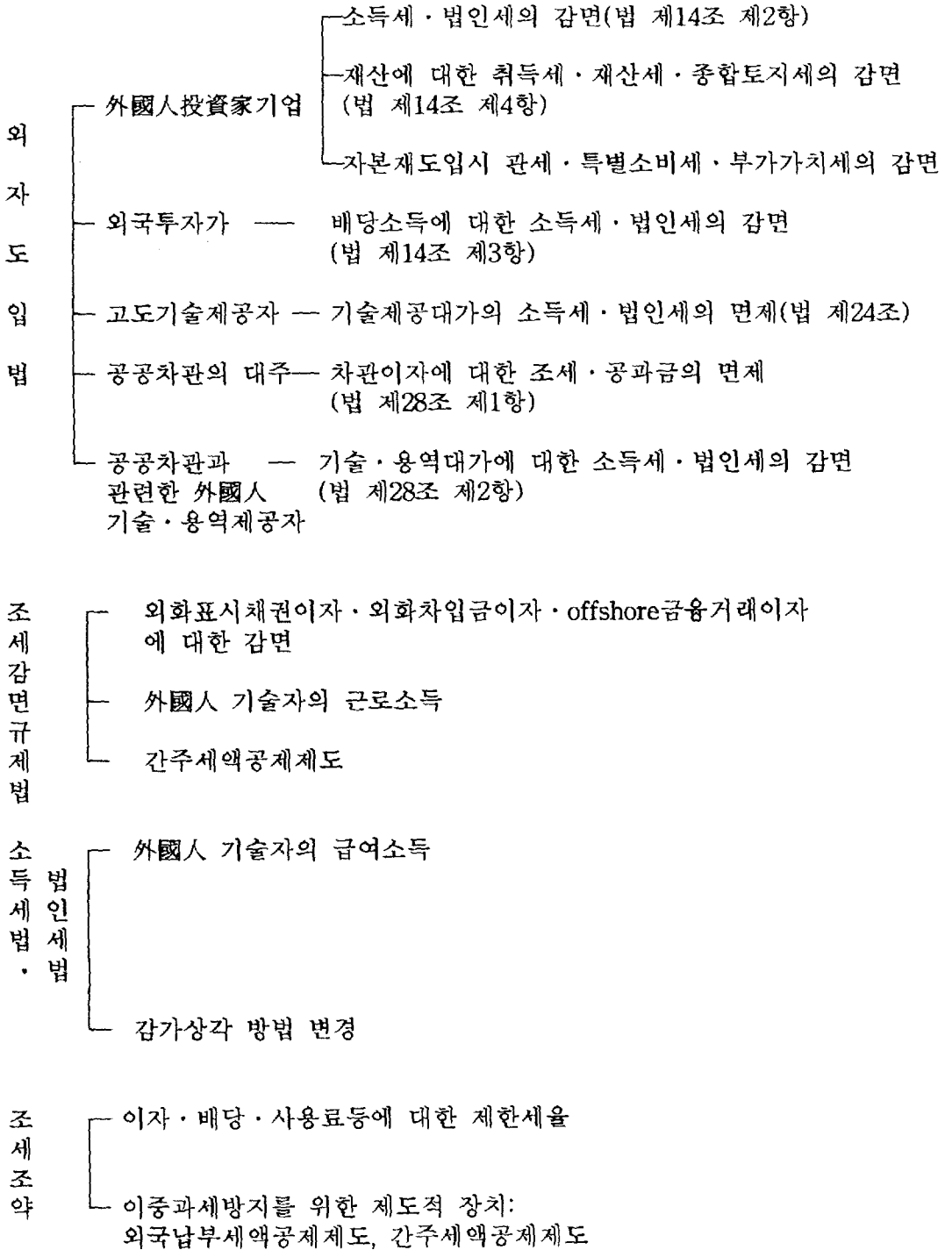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자도입법에서는 外國人投資家기업 및 외국 투자자에 대한 감면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상업차관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은 폐지하였다.

따라서 현행 外國人投資家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에 한하여 부여되고 있다.

Ⅲ. 外國人投資家企業에 대한 稅制支援 內容

外國人投資家에 대한 조세감면체계는 다음 페이지의 <表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번 논의에서는 外國人投資家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외자도입법상의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감면, 자본재 도입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감면,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및 기술제공대가의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그리고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간주세액공제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表 1> 外國人投資家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체계



1. 外國人投資家企業의 事業所得에 대한 租稅減免

(1) 現行 減免要件(外資導入法)

外國人投資家기업 및 외국투자가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가 감면되는 外國人投資家사업은 그동안 外國人投資家の 자유화 추진과 함께 그 범위를 꾸준히 축소 조정하여 온 결과, 현재에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제조업 80개, 서비스업 3개등 총 83개 사업)과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외도법 제14조, 외도령 제13조)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에서도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外國人投資家기업(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外國人投資家기업 포함)의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외도법 제14조 및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감면)의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2) 減免內容(外資導入法 第14條, 第15條, 第16條)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外國人投資家비율(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전액을 감면하며,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外國人投資家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하여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전액을 감면하며, 그 다음 2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외도법 제16조 제1항).

外國人投資家가가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동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은 신주취득의 원인이 된 당초 보유 주식(구주)의 조세감면 기간이 적용된다(외도법 제16조 제2항).

(3) 重複支援의 排除

外國人投資家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소득세의 감면과 중복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에는 원래 투자세액으로 공제할 세액중 내국인 투자비율만큼에 한정하여 투자세액 공제가 허용된다(조감법 제117조 제5항).

기타 外國人投資家기업의 감면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에는 납세자가 하나만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4) 最低限稅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확보 및 국민개세주의적 입장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저한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간에 각종 감면전의 순수한 과세표준에 12%를 곱하여 얻게되는 세액만큼은 최저한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外國人投資家 활성화를 위하여 外國人投資家기업의 경우에는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에 대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최저한세의 적용을 유보하고 있다.

2. 外國投資家の 配當所得에 대한 所得稅·法人稅 減免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후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중에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외도법 제14조 제3항). 外國人投資家가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인가받은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감면기간중에 발생한 소득(배당의 원천)의 배당에 대하여 적용된다. 外國人投資家기업이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받은 무상주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새로운 주식취득의 원인이 된 당초 보유 주식(구주)에 대한 배당에 대한 감면기간이 적용된다.

3. 關稅・特別消費稅・附加價值稅의 減免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이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를 外國人投資家의 인가 또는 신고 수리된 내용에 따라 도입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外國人投資家의 인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外國人投資家금액이 미화1 백만달러 이하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1년, 外國人投資家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이어야 한다(외도령 제17조)

4. 取得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減免

外國人投資家기업이 인가받은 사업 또는 신고수리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기업의 外國人投資家비율에 따라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감면한다. 다만, 外國人投資家자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수리된 外國人投資家기업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기업의 外國人投資家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50%에 상당하는 세액(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감면한다.

5. 技術導入契約에 의한 技術導入對價의 免稅

(1) 免除對象

1984년 6월 30일 이전까지와는 달리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외자도입법에서는 사전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기술도입의 문호를 개방하였다(외도법 제23

조). 기술도입계약은 우리나라 국민 또는 법인이 外國人으로부터 공업소유권 기타 기술의 양수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그 대가의 지급을 대외 지급수단에 의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범위의 기술과 그 기술의 사용에 직접 필요한 용역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2) 減免期間

국민경제에 긴요하고 독자적 개발이 곤란한 고도기술로서 재무부장관이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술의 도입계약내용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당해 계약에서 그 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간 면제한다(외도법 제24조, 외도령 제24조의 2).

6. 看做稅額控除制度(Tax Sparing Credit)

간주세액공제제도는 투자유치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外國人投資家에게 국내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서 부여된 조세감면세액을 外國人投資家가의 거주지국이동 투자가의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유치국에서 실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조세감면혜택을 투자자에게 주는 제도이다. 이는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이 우리나라가 부여한 조세감면을 상대방 국가의 과세권으로부터 보호하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양국간의 조세협약상에 간주세액공제제도가 채택되어 있지 않은 외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감면제도는 투자 유인의 효과는 작고 세수의 감소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물론 납세의 이연 등의 간접적인 효과도 고려해야하며, 투자국의 사업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투자유치국의 한계세율보다 낮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은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되지만 투자국에서 과세를

할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간주세액공제제도가 채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세감면의 투자유인의 효과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조세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간주세액공제제도를 채택토록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국외에서 우리나라 투자가에 대하여 감면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분만큼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였다. 공제대상 법인은 감면분만큼은 손금에 산입할 수도 있고 총 산출세액에서 감면분만큼을 세액공제할 수 있는 선택적인 방안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상에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분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조세협약상에는 “체약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세수확보가 긴급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국내세법의 개정만으로 그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였다.

IV. 外國人投資家企業에 대한 向後 租稅政策 方向

1. 外國人投資家 活性化를 위하여 考慮하여야 할 要素

(1) 産業構造調整을 위한 外資導入政策의 轉換

1980년대 중반 이전 우리나라의 외자도입 형태는 차관이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투자여건의 개선에 따라 外國人 직접투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한편, 21세기 우리나라가 선진경제의 진입을 위해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지만 선진국들은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여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단기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분야의 外國人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여야 하며 핵심기술을 포함한 취약한 부문의 기술도입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外國人 投資家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도 종전과는 달리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고도기술부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아시아 主要國의 投資誘引制度 擴充

일반적으로 투자의 결정요소 또는 국제적 자본흐름의 결정요인에 관한 대부분의 보고서 내지 실증분석 결과는 투자인센티브제도 특히 세제상의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外國人投資家의 민감도는 대단히 낮다는 것을 지적해왔다. 우리 재무부의 外國人投資家 활성화 조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아시아 주요국은 外國人投資家 및 국내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유사한 수준의 투자유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조세유인 제도때문에 外國人投資家의 입지선정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 금융, 인프라 등 제반투자환경이 함께 갖추어져야 外國人投資家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파악된

다. 外國人投資家기업의 관리자를 면담하여 투자입지선정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그들은 정치, 사회의 안정, 임금과 노동의 질, 인프라, 금융, 기술보호제도등 여러 변수를 검토하여 투자입지를 결정하며 조세유인은 이러한 변수중 하나일 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며 아시아 각국은 거의 유사한 조세유인을 갖추고 있어 조세유인 이외에 제반 요소가 입지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된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다른 요인들이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른 제반 여건이 유사하다면, 세계상의 유인제도가 결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外國人投資家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실효성이 없다고 파악되는 지원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산업정책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문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은 축소하되 지원의 강도는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表 2>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비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 국	태 국	한 국
·장려사업에 대한 감면	○	○	●	●	●
·지역중심센터(OHQ)에 대한 지원	○	○			
·투자세액공제제도		○			○
·투자소득공제제도	○	○		●	
·가속상각제도	○				○
·관세 및 부가세 감면		○	●	●	●
·이중 비용공제		○		●	
·역외 금융거래지원	○	○		●	○

註: ○ 일반세법, ● 外國人投資家지원특별법

※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내용 별첨

2. 外資導入法上 租稅支援制度의 擴大

정부는 외자도입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전략고도기술수반 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조세에 대한 감면제도를 확충하고(외자도입법 14조),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는 것이다(조감법 47조).

또한 현행 금융·조세상의 지원대상인 고도기술의 기본골격은 '84년도에 선정되었으나 그동안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기술 또한 진보됨에 따라 상당부분이 일반기술로 이행되어 산업구조 고도화 방향과 일치되지 않으므로 고도기술범위를 전면 개편하여 중점지원함으로써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현 행	개 선 (안)
- 법인세 또는 소득세 ○ 사업개시년도와 그후 3년간 100% 감면 ○ 그후 2년간 50% 감면	○ 최초 이익발생년도부터 5년간 100%감면 ○ 그후 3년간 50% 감면
-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50% 감면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100% 감면
-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 5년간 50% 감면	○ 5년간 100% 감면, 그후 3년간 50% 감면
-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 5년간 50% 감면	○ 5년간 100% 감면, 그후 3년간 50% 감면

3. 企業課稅制度의 全般的 改編 推進

세계경제의 개방화·국제화에 부응하여 법인세율, 감가상각 제도 및 세무회계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外國人投資家기업에 국한된 지원제도는 아니나 外國人 投資企業의 국내영업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현재 법인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1) 法人稅率 引下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대외경쟁력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일반 법인세율	○ 과표 1억원 이하: 18% 초과: 32%	○ 과표 1억원 이하분: 18% 초과분: 30% ○ 감면축소와 함께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가인하 추진
- 공공 법인세율	○ 일반공공법인 · 과표 3억원 이하: 18% 초과: 25%	○ 일반공공법인 · 과표 1억원 이하: 18% 초과: 25%

경쟁국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일 본	싱가폴	말레이시아	대 만
37.5%	30%	35%	25%

(2) 減價償却制度의 改編

가. 耐用年數의 伸縮的 適用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내용년수에 의하여 감가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년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산별 내용년수분류를 8-15개 내외로 그룹핑하여 단순화 -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범위 내에서 기업이 실정에 맞게 내용년수를 책정하여 적용 - 실제 사용가능년수가 기준내용년수 보다 현저히(25%이상)짧거나 긴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년수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殘存價額制度 廢止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대상금액을 확대하여 투자자본의 조기 회수를 지원하고자한다.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존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고정자산: 취득가액의 10% ○ 무형고정자산: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존가액제도는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정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하여 상각율을 계산 ---> 5% 잔존가액은 감가상각 종료연도에 비용처리

(3) 超過留保所得稅制度的改善을 통한 利益金の再投資誘導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 대기업(국내기업 포함)이 배당가능이익 50%와 자본금의 1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내부유보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15%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여금 처분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초과유보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기업발전적립금은 결손금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토록하고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배당재원으로 사용한 경우 그 배당한 금액에 대하여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추정.

(4) 外國納付稅額控除制度改善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국별한도제를 적용하여 소득발생지국별로 공제한도액을 적용 - 공제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한도제를 일괄한도제로 전환하여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으로만 구분하여 공제한도액 적용 - 공제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공제허용

4. 稅務行政서비스의改善

이밖에 정부는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세심판소내에 外國人投資家기업의 조세심판을 담당할 전담심판부를 설치 운영한다.

둘째, 추계과세의 지양을 통한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94.6 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배분공식을 폐지한 바 있다.

세제, 고정사업장 판정문제 등 분쟁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한다.

네째, 外國人投資家기업을 위한 각종 영문 책자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다섯째, 국세청 본청, 지방청 및 주요 세무서에 국제조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V. 結論

한국의 稅制改革의 기본적인 흐름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각종 감면제도의 축소 내지 통폐합으로 과세베이스를 넓히고 세제를 단순화하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공평과세를 도모함에 있다.

外國人投資家기업에 대한 조세정책도 이러한 稅制改革의 기본적인 흐름에 맞추어 각종 감면이 꾸준히 축소되어 왔다. 외자도입법상의 조세지원제도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와 국제적 자본흐름의 추세에 맞추어 축소되어왔으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감면제도도 통폐합되거나 축소되어왔다.

그러나,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外國人投資家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은 국내 稅制改革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외에 다른 관점에서도 파악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검토시의 고려요소인 세수확보, 세부담의 형평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납세비용 및 징세비용 이외에도 外國人投資家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경제적 효과, 조세협약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납세 비용, 경쟁국의 세제상의 지원 제도 등이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外國人投資家의 경우 투자대상국과 자본국의 조세정책이 상이함으로 세제상의 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평가하기가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外國人投資家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은 조세협약 체결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외국투자자의 모국에서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정책에 따라 국내법상의 조세지원의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이중과세방지 협약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외국과 맺어진 조세협약은 쉽게 개정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세액공제제도,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 등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外國人投資家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外國人投資家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는 UN의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보고서(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199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外國人投資家의 질적요인이 매우 중

요하며 자본흐름의 양에 집착하여 질적 측면이 무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外國人投資家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은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자본수익율을 조정함으로써 국내유입 자본의 양과 질을 관리한다는 거시경제적 관점과 조세의 중립성 확보라는 미시경제적 관점을 포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 및 기술의 도입이 국내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산업구조조정이라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도 이를 검토해야 한다.

전주성 박사가 KTI 2주년기념 심포지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일반적 요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배양되는 것이지만 조세정책은 비교적 단기간에 외국기업의 기술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어떤 경우에는 국내기업기준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수준보다 더 과감한 기술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이 外國人投資家기업에게 필요할 수 있다.

종합하면 外國人의 국내투자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外國人投資家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제도가 갖는 실효성, 外國人投資家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제도가 조세의 중립성에 미치는 미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경제의 국가 경쟁력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外國人投資家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主要國의 租稅支援制度

- 장려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기술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등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14)에 따라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년도와 그 다음 년도부터 3년간은 전액, 그후 2년간은 50%의 법인세를 감면함.
- 싱가포르의 경우 경제개발청(EDB)이 선정한 제조업에 대하여 제품, 기술, 투자규모등에 따라 5-10년간 법인세를 감면
- 말레이시아의 경우 자본집약적이고 고도과학기술수반사업에 대하여 5년간 법정소득의 30%만 과세하고, 특히 국가경제에 중요한 전략 project에 대하여는 100% 법인세를 감면
- 태국의 경우 자본집약적이고 서비스집약적 산업에 대하여 3-8년간 법인세를 감면
- 中國의 경우 투자기간이 10년 이상인 제조업에 대하여 이익발생후 2년간은 전액, 그후 3년간은 50% 법인세를 감면

- 지역중심센터(Operational Headquarters, OHQ)에 대한 지원

- 싱가포르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타국소재의 자회사, 관계회사, 관련회사와 이들 지점에 경영기술, 기타지원용역을 제공하는 운영본부를 싱가포르내에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본부의 소득은 10%로 저율과세
- 말레이시아의 경우 자회사, 계열회사를 위한 기술지원등을 하는 지역본부를 말레이시아 내에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 용역대가, 로열티등에 대해 5-10년간 10%로 저율과세

- 투자세액공제제도

- 우리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는 바, 기술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특정설비투자등의 경우 투자세액에 대하여 5-10%의 세액공제 허용
- 말레이시아의 경우 장려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승인일 이후 5년 이내의 자본적 지출액의 60%를 과세년도 법정소득의 70% 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와 상계하며, 잔액은 이월가능

- 투자소득공제제도

- 싱가포르의 경우 승인된 선도산업분야(제조,건설 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등을 사업승인후 5년 이내의 기간내 투자시행시 신규투자액의 50%까지 과세소득에서 공제
- 말레이시아의 경우 '95.12.31 이전에 생산시설의 확장, 현대화를 위한 자본적지출을 행하는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지출액의 4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

- 가속상각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초과가동기계장치, 수출사업, 외국항행사업 등에 대한 특별상각을 인정(이번 세법 개정시 폐지 예정)
- 싱가포르의 경우 컴퓨터,자동화설비,산업용로봇트등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감가상각율(초기20%,매년5~20%)대신 연100%일시상각율 또는 33.3%의 특별감가상각율을 인정

-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를 도입시 외자도입법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의 50%를 감면

- 태국의 경우 장려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구개발용으로 도입하는 기계류, 기자재에 대하여는 최초선적분 도착일로부터 8년간 수입세를 감면
- 말레이시아의 경우 장려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전기.전자 등의 품목수입시 저율의 수입관세를 부과
- 비용의 이중공제
 - 말레이시아의 경우 R&D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로 승인된 연구회사나 연구기관과 신기술법인은 해당비용의 200%까지 공제 가능
- 역외금융거래 지원
 -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외국환은행의 offshore 금융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취이자,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면제

證券業과 銀行業의 兼業이 金融市場과
經濟發展에 미치는 影響과 展望

許 惠 斌(Xu Hui-bin)

(中國 人民建設銀行 資金部 副主任)

目 次

1. 證券과 銀行業은 兼業행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兼業할 수 없는 것인가?51
2. 證券業과 銀行業의 兼業은 金融市場과 經濟發展에
대하여 重大한 影響을 미칠 것임. 53
3. 證券市場 發展趨勢 展望. 55

최근 몇년동안 證券市場과 銀行業의 發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國際金融市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론가와 실무자가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證券業과 銀行業의 兼業가능성 여부와 그 發展방법의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1. 證券業과 銀行業은 兼業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兼業할 수 없는 것인가 ?

銀行이 證券業務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國內外에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혹자는 證券業과 銀行業은 分離되어야 한다고 하고, 혹자는 銀行이 證券業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한다. 本人은 後者の 의견에 찬동한다.

國際金融市場의 변화의 각도에서 보면 銀行業의 分業은 이미 변화과정을 거쳐 왔다. 많은 국가에서 銀行業의 證券業에의 참여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相關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銀行자본가가 단기에금을 證券 등의 長期投資에 과다하게 사용하여 1929년 金融위기를 야기하였다고 한다. 經濟大恐慌이후 미국정부는 金融資本家が 고객의 預金を 이용하여 長期投資에 나서는 모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銀行의 資金運用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고 銀行業과 證券業의 分離를 확립하였으며, 長短期業務를 구분하고 商業銀行과 投資銀行을 별도로 설립하였다. 日本의 경우에도 美國의 金融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엄격한 金融分業모델은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많은 銀行들이 銀行業務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證券業務를 처리하고 있다. 물론 일련의 유럽국가에서 엄격한 金融分業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다.

美國 金融界의 1920년대 말기에 시작된 大危機의 原因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통된 정설이 없으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혹자는 聯邦準備制度가 소규모 銀行의 負債償還能力을 적절히 강화하여 그 倒産을 막지 못한 것이 위기와 공황을 부채질한 주요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또 혹자는 1929년~1933년간 貨幣供給이 최소 1/3이나 감소한 것이 대위기의 심각성과 장기성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다. 한편 世界銀行의 보고서중 최근의 연구결과는 證券의 賣買와 投資銀行業務는 1920년대 말기의 銀行倒産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經濟發展과 投資需要의 증가에 따라 1950년대부터, 특히 1970년대 말기 이후 서방 일부국가의 銀行業務와 證券業務가 점차 교차되면서 投資銀行이 證券業務에 종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타 銀行도 證券業務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주요원인은 첫째, 資金不足에 기인하는데 일부국가에서 失業이 증가하고 資本이 不足하게 되면서 취업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本國銀行에 대해서는 分業化된 업무영역을 반드시 준수하게 하면서 外國銀行에게 證券投資업무를 허용하였다. 또한 일부 銀行의 경우 國內에서는 分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國外에서는 업무가 교차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商業銀行은 자산의 유동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有價證券에 대한 投資를 늘리는 한편 장기대출이 늘어나면서 銀行의 예금흡수업무이외에 債券發行 및 高額預金證書 등과 같은 각종 起債에 의한 資金調達업무를 개발하여 資金源을 확보하는 등 負債管理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銀行은 반드시 證券去來방면의 업무를 發展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는 電算網등 현대화된 업무설비를 銀行에서도 보편적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銀行機關과 固定費用의 불변이라는 상황하에서도 종합적인 경영을 실행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原價를 절감하여 수익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장단기의 資金의 결합사용과 업무교차 또한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많은 銀行이 전통적인 分業을 초월하여 업무를 상호결합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發展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1989년의 世界銀行 보고서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證券業과 銀行業의 兼業은 金融市場과 經濟發展에 대하여 重大한 影響을 미칠 것임.

證券과 銀行은 모두 金融產業에 속하지만 하나는 直接金融에 하나는 間接金融에 속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兩者는 모두 이미 거대한 產業으로 성장하였으나 社會자본의 확보면에서 서로 矛盾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 만약 銀行業과 證券業의 兼業을 허용하고 銀行이 證券發行업무와 代理업무를 하도록 한다면 金融市場發展과 經濟發展을 어느 정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證券業과 銀行業의 兼業은 국가산업정책의 추진에 유리하다. 國際金融市場의 입장에서 본다면 一般銀行은 공상기업과 전통적인 업무관계를 갖고 있다. 기업의 商品市場, 生産能力, 技術水準, 競爭能力, 經營狀況, 管理狀況 및 發展展望에 대하여 비교적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대단히 깊은 이해를 하고 있어 證券의 대리발행시 기업의 資金使用度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資金投資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도국에서는 證券市場의 운영에 있어서 銀行을 통하여 일부 현존하는 대중형기업의 國家所有株式과 法人所有株式을 판매하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예산외의 資金으로써 일련의 대중형 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지분조절 등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소형프로젝트의 건설 및 중복건설에 이용하는 資金을 대형프로젝트 및 대기업의 건설에 집중함으로써 국가가 필요로 하는 經濟的 효율성이 높은 업종과 산업부문에 투입할 수 있다.

둘째, 證券業과 銀行業의 兼業은 銀行의 起債에 의한 資金조달 채널의 확대를 용이하게 하여 資金力を 증강시킬 수 있다. 中國의 입장에서는 개혁개방이후 몇개의 전업 銀行(현재 國有商業銀行으로 전환중임), 특히 中國人民建設銀行은 證券發行面에서 상당한 歷史를 갖고 있다. 즉 이미 인민폐 1,270억 상당의 각종 證券의 發行 및 代理發行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자체발행한 金融債券과 國家投資債券은 인민폐 19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銀行의 證券發行은 한편으로는 國家經濟建設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長期信用貸出資金의 모집을 위한 수단인 하나로서

도 역할을 하였다. 업무처리면에서도 일련의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어 인적자원의 배양에도 장점이 있다. 동시에 銀行의 支店과 業務連結網이 완비되고 上下가 연결되며 자체적인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어 證券發行面에서의 신용도가 비교적 높아 유리한 시기에 債券發行을 할 수 있어 資金吸引力이 뛰어난 바, 이는 대규모 起債가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며 또한 기타 證券會社나 金融機關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建設銀行의 經驗은 銀行이 起債에 의한 資金調達 경로를 개발하는 것은 金融商品의 종류의 다원화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중장기 資金源의 수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셋째, 證券業과 銀行業의 兼業은 신용대출(信貸)의 證券化에 유리하다. 현재 일부기업이 銀行貸出을 사용함에 있어 적시상환이 불가능하여도 銀行은 재촉할 방법이 없다. 만일 證券業과 銀行業의 兼業이 실행된다면 銀行의 貸出債券은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證券으로 이루어져 銀行은 대출후 證券화된 債券으로써 中央銀行에 재할인 대출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필요시 金融機關間에 보통의 환어음 전매와 같은 전매가 가능하여 기업의 신용관념의 강화와 신용질서의 준수를 크게 촉진할 것이다.

넷째, 證券業과 銀行業의 兼業은 銀行이 갖고 있는 각종 기능을 통일하여 상호보충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經濟·金融狀況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경우 현재의 銀行資金조달 및 융자기능의 불완전과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으며, 단일한 기능으로 인한 경쟁의 편중성 및 短期去來行爲를 보충할 수 있어 銀行資金의 유동성·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證券業과 銀行業의 兼業이 유리한 면은 많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적어도 두가지 문제에 주의해야 하는 바, 첫째는 證券業과 銀行業의 兼業은 長短期資金間의 혼란을 초래하여 短期資金을 長期證券資金에 이용할 위험성이 커서 통화 팽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는 株價騰落으로 인한 영업손익의 위험성이 一般銀行業務보다 커서 株式去來時의 株式損失이 銀行利潤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는 銀行職員의 업무숙달로 인한 一部資金의 證券市場조작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3. 證券市場 發展趨勢 展望

최근 國際經濟, 貿易去來 및 생산경영의 다국적화에 따라 國際投資환경은 크게 개선되었다. 동시에 國際金融市場의 發展도 활기를 띠어 金融構造와 業務經營 등의 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발행하였다. 특히, 신용방식은 銀行貸出위주에서 市場에서 去來가 이루어지는 債券 및 證券方式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으며, 投資의 證券化가 신디케이트 론을 대신하여 중요한 投資方式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1965년의 國際金融市場에서의 債券發行은 33억 달러를 넘지 않았으며 1981년의 國際債券 사용자도 528억 달러를 넘지 않아 신디케이트 론의 928억 달러보다 크게 낮았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몇년 동안은 계속 證券融資의 比重이 신디케이트 론을 超過하였다. 1985년의 債券融資는 1,691억 달러로서 그 비중이 59.7%를 차지하였으며, 1989년에는 3,219억 달러로서 69%, 1990년에는 2,364억 달러로서 54.7%, 1991년에는 3,190억 달러로서 61.6%를 차지하여 債券融資가 나날이 신디케이트 론을 超過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資金의 需要者가 점차 각종 債券·株式·預金證書 발행의 方式을 통하여 직접 대중에게서 資金을 조달하여 가고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非銀行 金融機關도 대규모로 金融市場에 개입하고 다량의 용자활동을 진행하게 되면서 金融市場의 전통적인 分業活動下에서의 商業銀行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각종 銀行 및 여타金融機關의 업무의 상호결합을 촉진하여 다양한 기능을 구비한 銀行으로 發展되어 가고 있다.

다양한 기능을 구비한 銀行으로의 發展過程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는 銀行業務가 나날이 證券化되고 있을 뿐 아니라 國際化와 대규모 銀行으로의 發展趨勢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 몇년동안 國際적으로 많은 銀行이 外國에 支店 또는 事務所를 개설하고 있는 바, 이는 많은 銀行이 더욱 많은 金融資本을 확보하여 銀行間의 國際競爭과 도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國際金融市場의 변화에 따라 향후 國際證券市場은 더욱 빠른 속도로 發展될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證券市場의 經營관리방식은 證券業과 銀行業의 分離經營에서 점차 부분적인 또는 전면적인 兼業方式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소위 부분적인 兼業이라는

것은 銀行이 一級證券市場에서 起債業務를 크게 發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兩業을 완전히 兼業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두가지 업종의 완전한 兼業이 이루어지려면 資金管理측면에서 엄격한 규정을 두고 會計上으로도 單獨採算制를 채택하여 銀行이 證券業을 株式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는 子會社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證券市場의 규모가 확대되어 갈 것이다. 셋째, 證券去來가 國際化되어 갈 것이다. 넷째, 證券去來所의 골격이 株式위주로 되어 갈 것이다. 다섯째, 證券市場이 급속히 법제화 및 규범화되어 갈 것이다.

물론 모든 국가의 金融市場의 發展에 있어서는 自國의 社會制度, 經濟基準 및 市場現狀 등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또 國際市場운영의 추세를 따라야 한다.

中國의 경우 10여년의 경험을 통해 證券市場은 매우 빠르게 發展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93년 말까지 中國에는 85개소의 專業證券會社와 1,200여개소의 證券營業部가 있으며, 각지의 金融機關에도 많은 證券代理店이 설치되었다. 전국에는 인민폐 5,400여억원 상당의 각종 證券이 發行되었으며 그중 각종 株式은 인민폐 209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현재 證券發行市場은 이미 상당한 규모에 도달하고 있으며, 證券流通市場도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일정한 정도까지 發展되어 있다.

中國의 제7기 全人大 4차회의에서 공식통과된 國民經濟와 社會發展 10個年 計劃과 “8·5”計劃 要綱에서도 향후 10년동안 中國은 계속 證券市場을 개척·發展시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現代企業制度의 發展에 따라 株式制는 점차 확대될 것이고 企業間의 相互 지분참여, 지분보유 및 지분조절을 허가함에 따라 일반에 대하여 적절한 정도로 株式을 公開發行하여 株式市場의 안정적인 發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둘째 中國의 거시經濟관리체제개혁의 부단한 發展에 따라 國債中心의 債券市場이 점차 확대될 것이며, 셋째 證券去來所와 全國金融市場의 見積·情報·去來體系의 수립에 따라 證券去來所에서의 集中去來와 證券社에서의 窓口去來가 동시에 병존하여 지역적인 去來센터와 전국적인 去來市場이 같이 發展하는 證券去來市場체계가 성숙되어 갈 것이다. 넷째, 中國의 對外開放의 확대에 따라 證券市場의 이용 특히, 投資資金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外資를 도입해서 經濟發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國際金融市場의 변화와 國內證券市場의 신속한 發展, 특히 中國金融체제 개혁의 심화와 對外開放

의 확대에 따라 大型專業銀行의 國有商業銀行으로의 전환속도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證券市場管理體系와 완벽한 證券管理法規가 완비되어 갈 것이며, 商業銀行도 종합적이고 다기능의 銀行으로 發展하여 國際金融市場에서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韓國의 金融 및 證券市場 開放擴大와 對策

崔長鳳

(韓國租稅研究院 先任研究委員)

目 次

I. 序論	63
1. 經常去來와 金融去來	65
2. 金融開放의 前提	66
II. 金融 및 證券市場의 開放順序	67
1. 長短期 資本去來	70
2. 金融서비스去來	73
3. 外換去來	75
III. 金融 및 證券市場 開放의 現況과 計劃	77
1. 現況	77
2. 開放計劃	79
IV. 資本流入의 影響과 對策	89
1. 影響	89
2. 對策	90
<參考文獻>	108

1. 序論

한 국가의 경제가 대외적으로 開放됨에 있어서 그 개방의 대상은 실물상품, 서비스, 장단기 금융 그리고 통화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실물상품과 관련된 거래는 經常貿易去來,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는 經常貿易外去來, 장단기 금융과 관련된 거래는 長短期資本去來, 그리고 통화와 관련된 거래는 外換去來라 한다. 그리고 경상무역거래와 경상무역외거래를 합하여 經常去來라 하며 장단기 자본거래는 간단히 資本去來라고 호칭한다.

이 가운데 長短期 資本去來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금융거래이다. 한편 外換去來는 다른 모든 거래의 교환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外換去來는 통화와 통화간의 직접거래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廣義의 금융거래에 포함된다. 그리고 經常貿易外去來는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각종 금융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금융서비스 거래도 廣義의 금융거래에 포함된다.

우리 경제는 그 동안 수출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經常去來의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왔다. 그리고 점차 경제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금융서비스거래, 자본거래 및 외환거래의 개방이 점진적으로 擴大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개방경제는 국민의 福祉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의 문은 열려지길 바라면서 자국의 문은 자발적으로 열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국가간 타협의 과정에서 개방의 폭이 결정되고 있다. 더욱이 小規模의 經濟는 개방 이후 세계경제에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개방을 더욱 기피하려고 한다. 사실상 소규모의 경제인 경우에 개방경제가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점은 이론적으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경험적으로도 입증된 바 없다.

특히 금융은 실물상품과 달리 하나의 生産要素이며 實體가 없다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전통적인 이론에 의하면 본질적으로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은 제약이 있으며 경제 내의 파급효과에 있어서 일반적인 무역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의 개방이 국가경제 및 국민복지에 미치는 影響은 경상거래의 개방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

다.

불행히도 금융개방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외국의 사례 또는 금융개방의 모범적인 모델을 찾기가 힘들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金融開放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경제에 적합한 금융개방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金融去來의 開放順序를 摸索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本稿는 다음 第2節에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각종 금융거래와 이에 수반되는 경상거래가 調和를 이룰 수 있는 금융거래의 개방순서를 모색하고 정리하였다.

성공적인 금융개방을 위해서는 金融開放의 順序(order)외에 速度(speed)와 時期(timing)도 중요한 과제이다. 속도나 시기의 결정에 있어서는 해외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하여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데, 우리 경제의 입장은 국내 금융기관이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등 금융개방의 前提條件이 달성되는 정도에 맞추어 우리 경제의 필요에 따라 금융개방의 속도와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경제사회는 우리에게 국내경제의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選擇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개방의 속도와 시기를 선택하는 정책의 방향은 비교적 단순하다. 금융개방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지면 해당 금융분야를 개방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금융개방의 전제조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가급적 시기를 늦추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점진적인 속도로 금융을 개방하는 것이다.

第3章에서는 실제로 1993년말까지 진행된 우리나라 金融開放의 去來別 順序와 特徵이 第2章에서 모색된 金融開放의 順序에 비추어 설명되었다. 마지막 第4章에서는 모든 開放經濟가 경험하고 있는 金融開放으로 인한 海外資本流入에 대하여 對策을 모색하고 정리하였다.

이로 부터 本稿는 한국의 금융개방에 대한 현황, 전망, 앞으로의 계획 등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中國 등 經濟의 開放을 추진하고 있는 國家들이 올바른 方向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第2章에 앞서 經常去來와 金融去來間의 開放順序와 금융개방시에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前提條件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1. 經常去來와 金融去來¹⁾

그동안 경상거래의 개방은 일부 유치산업 및 농수축산업 보호, 도덕성 및 미풍양속 보존 등의 原則 아래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원칙에 준하여 현재 마약 등 특수상품과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경상거래가 금지되는 경우는 없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경상거래는 완전히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융거래의 개방은 國際收支管理, 海外資金에 의한 實物投資 增大, 適正 通貨量의 管理 등의 原則 아래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는 개방된 경상거래에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 이와 같이 금융거래는 극히 수동적이고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경상거래와 금융거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양 거래가 동시에 개방되어야 실질적인 開放이 이루어진다. 현재, 경상거래의 개방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성숙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金融去來의 開放은 필연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동시에 세계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금융개방에 대한 대외로부터의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金融去來의 開放은 필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상황에 있다.

금융개방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동안 시행해 온 순서대로 경상거래의 개방 후에 금융거래의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原則이다 (< I > 經常 - 金融 順序의 原則). 외국의 많은 문헌에도 경상개방 - 금융개방의 순서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개방의 위험이 작은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왜냐하면 경상개방으로 인한 위험은 개방된 특정 산업분야에 국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방이 다시 유보될 수 있는 반면에 금융개방으로 인한 위험은 전체 경제에 과급될 수 있으며 일단 개방이 되면 효과적으로 다시 유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험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경상개방 - 금융개방의 순서를 指向한 경우는 비교적 성공한 반면에 금융개방을 먼저 추진하거나 혹은 경상개방과 동시에 추진²⁾한 경우에는 실패한 사례를 쉽게

1) 본고의 분류에 따라 經常去來 중에 金融서비스去來는 金融去來에 포함된다.

2) 經常去來와 金融去來를 동시에 개방한 경우에도 그 효과는 금융거래를 먼저 개방한 경우와 일반적으로 유사하다. 金融去來의 開放效果가 經常去來의 開放效果보다 빨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발견할 수 있기 때문³⁾인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등이 경상개방보다 금융개방을 먼저 추진하여 개방이 失敗한 예이다.

문헌에 따른 이론적인 설명을 추가하면, 발전과정에 있는 국가의 경우 정책의 우선 순위가 國內經濟의 成長 또는 物價의 安定에 있으면 經常去來 - 金融去來 開放의 순서가 바람직하며 정책의 우선 순위가 國際競爭力의 強化 또는 換率의 適正水準에 있으면 金融去來 - 經常去來 開放의 순서가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⁴⁾. 그리고 금융개방은 언제나 通貨價値의 上昇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성장 또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실질통화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건설해질 때까지 금융거래의 개방이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⁵⁾. 또한 경상거래가 규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거래가 개방되면 國民福祉는 減少할 것이며 海外資本에 의한 投資 增大는 기존 실물부문의 왜곡현상을 악화시킨다는 주장도 있다⁶⁾.

2. 金融開放의 前提

금융개방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國民의 福祉를 증대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의 개방을 추진함에 있어서 前提되어야 할 몇 가지 일반적인 條件이 있다.

우선 금융개방으로 인하여 公共秩序와 國家安全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의 경우에라도 공중보건, 공중도덕, 공중환경, 미풍양속 및 국가안전보장을 훼손시킬 수 있는 금융개방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금융개방은 경제기반이 튼튼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금융개방에 앞서 經濟體質이 強化되어야 한다. 원貨價値 上昇 등 금융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체질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국내 금융산업이 國際競爭力을 갖추어 금융거래를 주도할 수 있으며 해외경제의 영향으로 인하

3) Edwards (1984) 참조.

4) Bhandari (1989)와 Sell (1994) 참조.

5) Edwards (1989) 참조.

6) Edwards and van Wijnbergen (1986) 참조.

여 국내경제가 왜곡되지 않도록 金利, 換率 등의 변동이 安定되는 경제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물가의 안정, 금리의 하향안정, 환율의 안정, 건전 재정, 국제수지의 적정규모 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⁷⁾. 구체적으로 주요 경제변수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금융개방의 중단 또는 일시적인 유보 등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극도의 경제교란현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끝으로 金融制度의 健全性 및 安定性을 유지하고 금융 거래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금융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제도를 보호하지 못하는 금융개방에 의해서는 결국 경제의 자주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得보다 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II. 金融 및 證券市場 開放順序([圖 II-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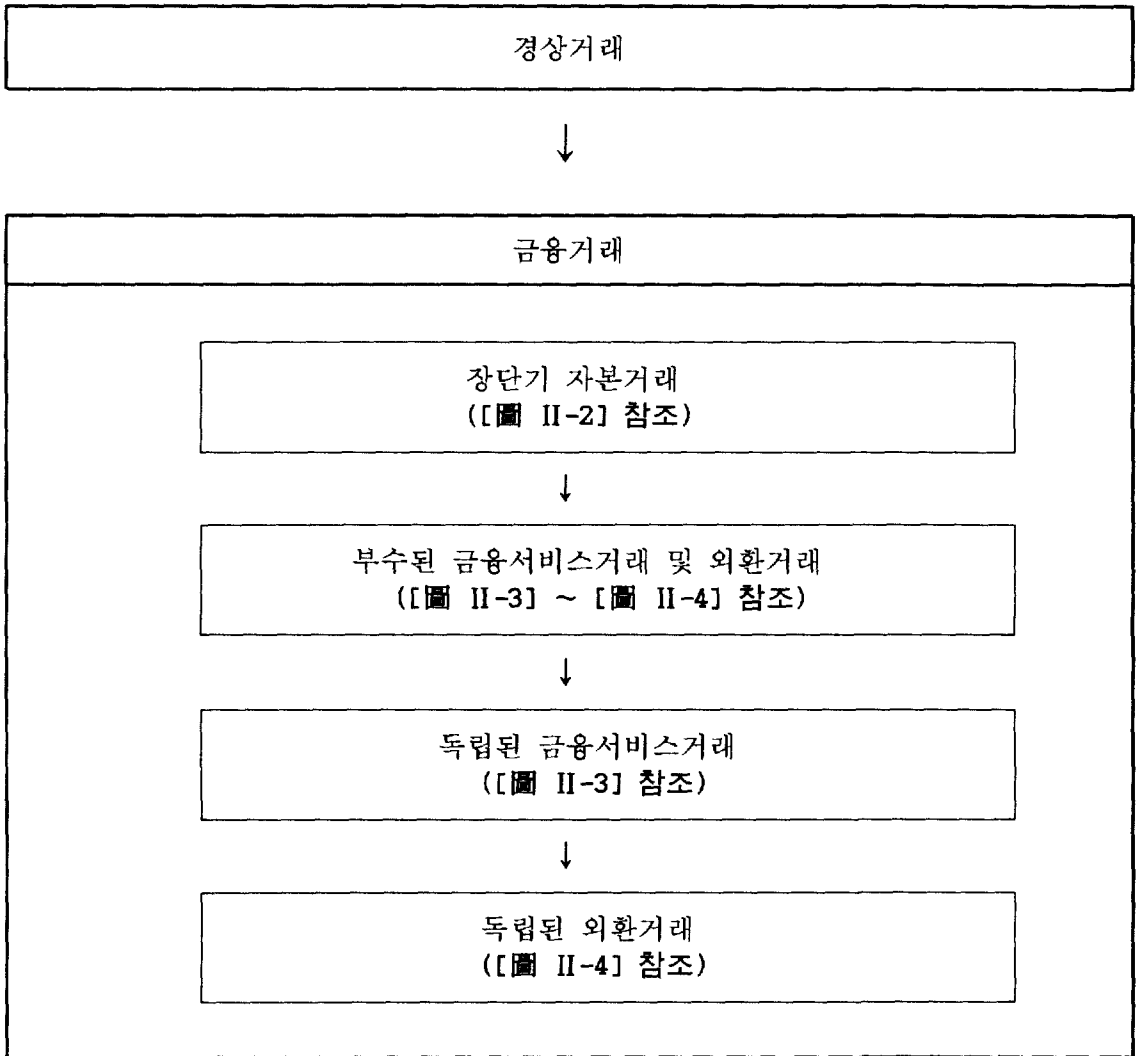
廣義의 金融去來에는 금융서비스거래, 장단기 자본거래 및 외환거래가 있다고 하였다. 金融서비스去來는 금융시장에서 거래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증권인수 등의 각종 서비스를 의미한다. 長短期 資本去來는 장단기 대출, 예금, 채권 발행 등 장단기 자금의 수요공급거래를 의미한다. 外換去來는 모든 거래에 수반되는 교환수단으로서의 거래 그리고 통화와 통화간의 교환거래를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장단기 자본거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금융거래이며 금융서비스거래와 외환거래는 장단기 자본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보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거래와 외환거래는 장단기 자본거래와 獨立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금융업이 전산기술의 발전으로 情報 産業化하면서 금융서비스거래와 외환거래의 獨立性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예컨대, 投資諮問의 금융서비스거래와 異種 通貨를 교환하는 외환거래는 장단기 자본거래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금융개방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課題인 금융개방의 順序를 살펴보면, 우선 金融서

7) 崔長鳳(1994. 9) 참조.

[圖 II-1] 金融開放의 順序



비스去來와 外換去來는 經常去來와 長短期 資本去來의 開放 效果를 원활히 하는 수준에서 개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금융서비스거래와 외환거래의 개방은 장단기 자본거래의 개방보다 늦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金融서비스去來와 外換去來 가운데서는 長短期 資本去來에 수반되는 去來를 獨立的으로 이루어지는 去來보다 먼저 開放한다. 그리고 獨立된 金融서비스去來와 外換去來 중에서는 金融서비스去來의 開放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금융개방은 長短期 資本去來 - 附隨된 金融서비스去來 및 外換去來 - 獨立된 金融서비스去來 - 獨立된 外換去來의 順序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II> 資本 - 金融서비스 - 外換 順序의 原則, <III> 連繫 - 獨立 順序의 原則).

그 이유를 설명하면, 金融서비스去來의 開放은 기본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자에게 제공하는 各種 金融서비스에 대한 開放을 의미한다. 현재 國內 金融機關은 금융거래자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外國의 金融機關에 비하여 크게 낙후되어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금융서비스거래의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융거래 시장은 외국 금융기관에게 대부분 잠식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과 금융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서비스거래는 자본거래가 개방된 이후에 개방될 필요가 있다. 國內 金融產業은 開放된 長短期 資本去來의 媒介役割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國際競爭力을 強化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外換去來의 完全한 開放은 금융개방을 最終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거래가 완전히 개방될 경우에 금융거래자는 외환의 매입/매도, 보유, 송금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원화도 국제거래에서 자유롭게 결제되며 원화 환율의 변동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외환거래가 완전히 개방되면 자본거래는 자연스럽게 개방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본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도 효과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外換去來의 開放은 資本去來의 開放 以後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外換去來가 完全 開放되면 금융개방경제의 체제가 완성되어 소규모의 경제구조인 우리나라도 國際經濟에 完全히 露出된다. 이에 따라 국내경제가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국제경제의 영향에 따라 국내경제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예컨대, 국

내금리 및 환율이 변동하여 금융투자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국내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초단기적인 자금의 급격한 이동이 발생하여 국내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外換去來의 開放은 金融서비스去來의 開放보다 늦게 推進되는 것이 타당하다.

1. 長短期 資本去來([圖 II-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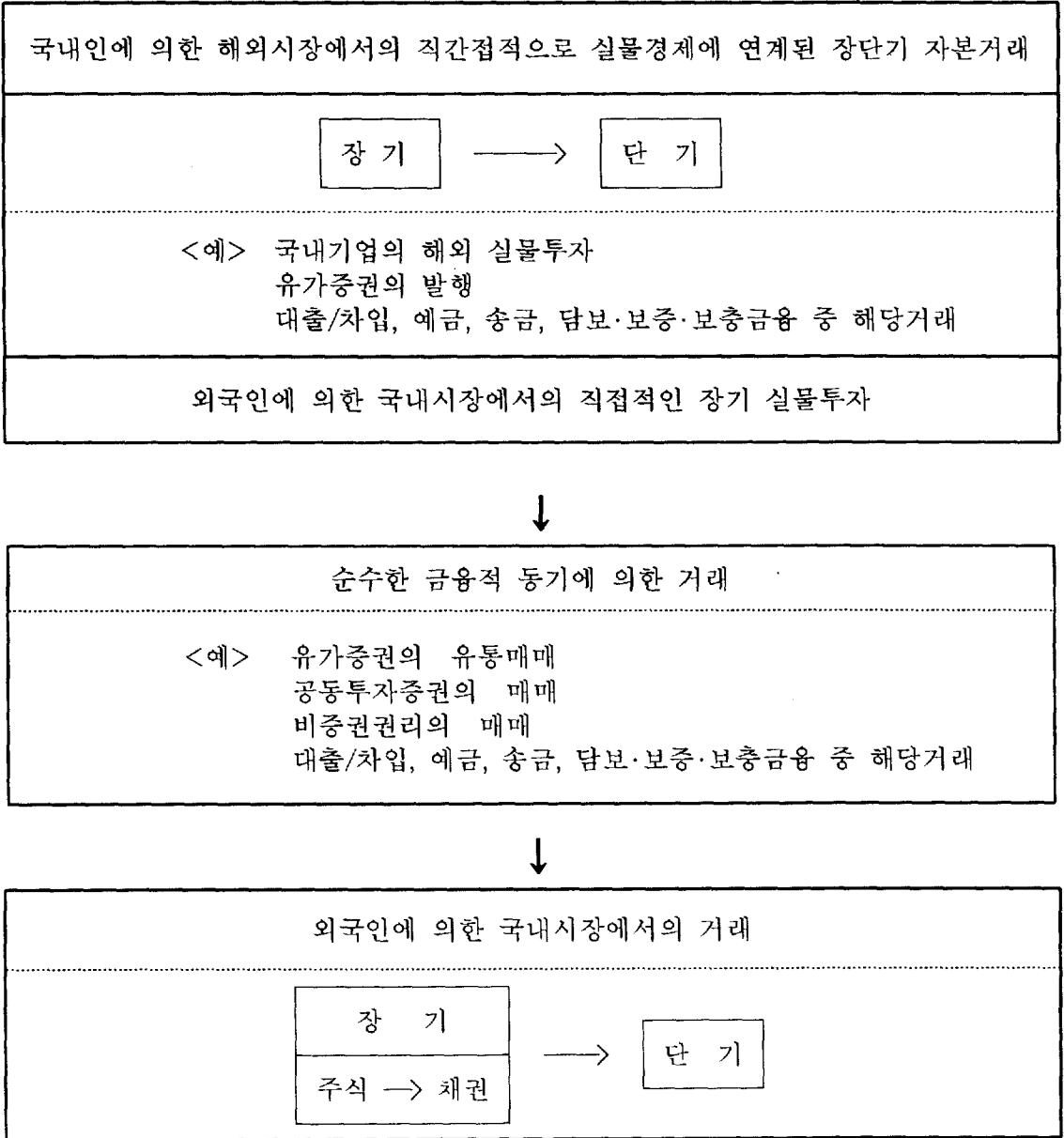
자본거래는 滿期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눌 수 있고, 場所에 따라 국내거래와 해외거래로 나눌 수 있으며, 主體에 따라 국내인에 의한 거래와 外國人에 의한 거래⁸⁾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자본거래의 性格에 따라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거래와 순수한 資金移動의 거래로 나눌 수 있다.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로서는 기업에의 투자, 부동산에의 투자, 수출선수금을 포함한 국제 상관습거래 등이 있다. 순수한 자금이동의 거래로서는 주식·채권·단기증권의 유가증권 발행, 주식·채권·단기증권의 유가증권 유통매매, 비증권권리의 매매, 공동투자증권의 발행, 공동투자증권의 유통매매, 대출/차입, 예금, 송금, 담보·보증·보충금융, 유가증권 자체의 이동 등이 있다⁹⁾. 비증권권리에는 스왑, 옵션 등, 공동투자증권에는 外國人전용 수익증권 등, 보충금융에는 NIF(Note Issuance Facility) 등이 있다.

자본거래의 개방순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장기자본거래를 단기자본거래보다 먼저 개방하도록 하며 특히 초단기 자본거래는 독립된 외환거래와 동일한 시기([圖 II-4] 참조)에 개방되도록 한다 (<IV> 長期 - 短期 順序의 原則). 長期 資本去來의 開放이 短期 資本去來의 開放에 비하여 國內經濟의 不安定性을 초래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특히 초단기 자본거래는 '핫 머니'의 거래로서 이는 독립적인 외환거래와 유사한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거래의 주체는 금융기관일 가능성이 많아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국내금융기관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8) 국내인은 거주자,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엄밀한 定義가 필요하다.

9) 本稿는 자본거래의 區分을 편의상 OECD의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 自由化 規約에 준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財務部 國際金融局(1994) 참조.

[圖 11-2] 長短期 資本去來의 開放順序



그리고 부동산에의 투자를 제외¹⁰⁾하고는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장단기 자본거래를 순수한 자금이동 거래보다 앞서 개방하도록 한다. 이는 經常 - 金融 順序와 連繫 - 獨立 順序의 原則에 의한 것이다.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거래의 개방은 기본적으로 이미 개방된 실물거래를 원활히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純粹한 資金移動의 去來는 間接的으로 實物經濟에 連繫된 去來와 純粹한 金融的 動機에 의한 去來로 나눌 수 있다. 간접적으로 실물경제에 연계된 거래는 기업의 투자자금조달을 위한 주식·채권 등 장기 유가증권의 발행 및 장기 차입, 기업의 운영자금조달을 위한 단기증권 발행, 기업에의 자금지원을 위한 담보, 보증 및 보증금 융 등이 있다. 純粹한 資金移動 去來의 경우에도 經常 - 金融 順序와 連繫 - 獨立 順序의 原則에 따라 間接的으로 實物經濟에 連繫된 去來를 純粹한 金融的 動機에 의한 去來보다 먼저 開放한다. 이때 간접적으로 실물경제에 연계된 거래는 직접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장단기 자본거래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개방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國內人'에 의한 '海外'市場에서의 去來를 '外國人'에 의한 '國內'市場에서의 去來보다 먼저 개방한다 (<V> 國內人/海外市場 - 外國人/國內市場 順序의 原則). 국내인에 의한 해외시장에서의 거래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단, 外國人에 의한 국내시장에의 직접적인 장기 실물투자는 실물경제에 연계된 거래로 본다. 外國人의 직접 투자는 부수되는 송금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물투자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國內人'에 의한 '海外'市場에서의 實物經濟에 直間接的으로 連繫된 去來와 外國人에 의한 國內市場에의 直接的인 長期 實物投資를 먼저 開放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이다. 이때 長期 - 短期 順序의 基本原則에 따라 長期去來를 短期去來보다 먼저 開放한다. 다음으로는 유가증권 및 공동투자증권의 유통매매, 비증권권리의 매매 등 純粹한 金融的 動機에 의한 去來를 개방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連繫 - 獨立 順序의 原則을 따른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外國人'에 의한 '國內'市場에서의 資本去來를 개방한다. 이 경우에도 장기거래를 단기거래보다 먼저 개방하며 장기거래

10) 不動產 投資의 去來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국가안전을 해칠 수 있다. 개방의 정도가 높은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부동산 투자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가운데에서는 株式去來보다 債券去來를 늦게 개방한다 (<VI> 株式 - 債券 順序의 原則). 앞으로도 당분간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높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경우의 채권개방은 일정률의 보장된 수익으로 인하여 일방적인 대규모의 해외자금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방에 수반되는 送金去來는 동시에 개방하되 독립적인 송금거래는 독립적인 외환거래의 개방과 같은 시기에 개방하도록 한다. 또한 유가증권 자체의 이동도 독립적인 외환거래의 개방시기에 개방하도록 한다([圖 II-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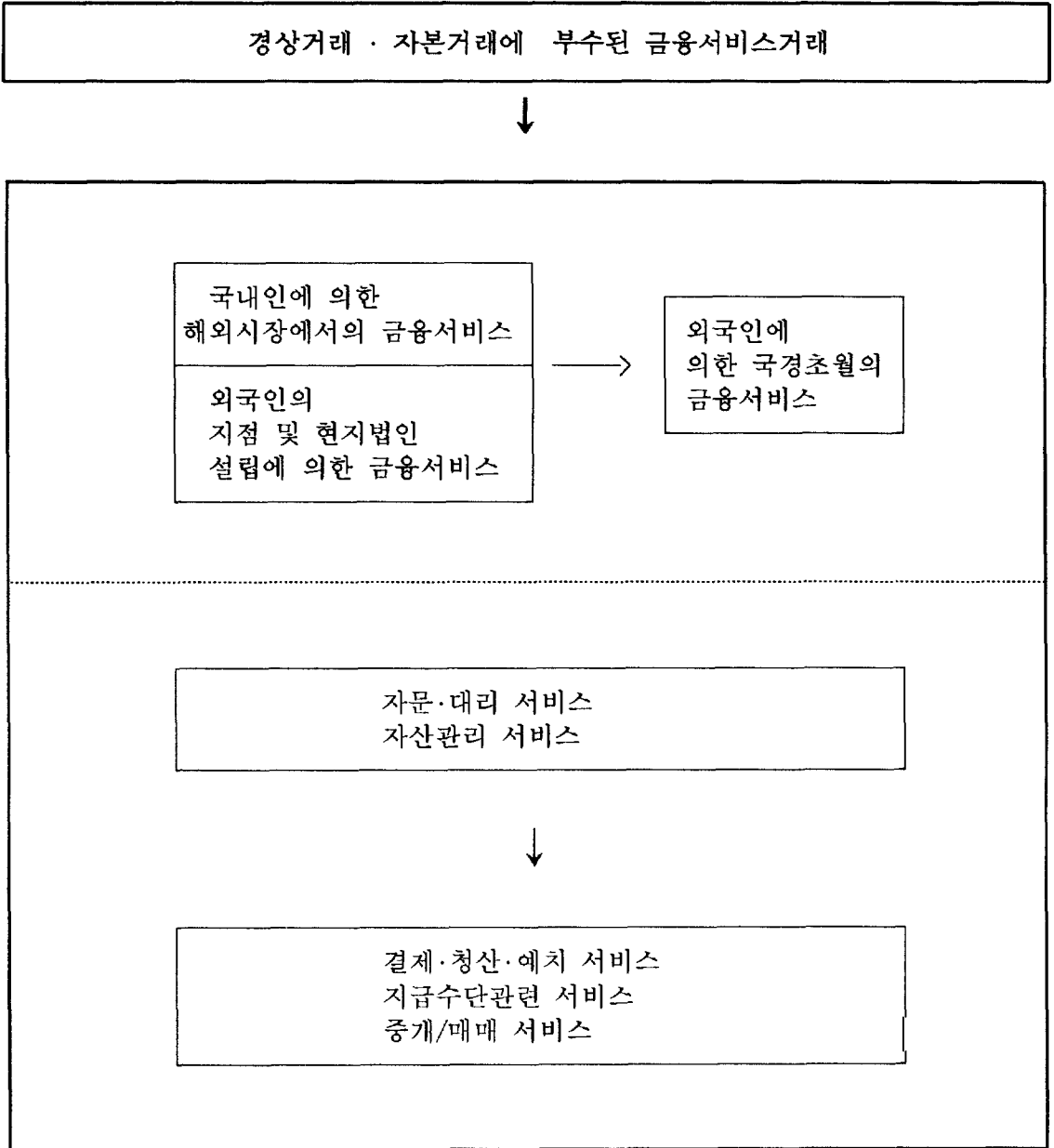
2. 金融서비스去來([圖 II-3] 참조)

금융서비스거래는 主體에 따라 국내인에 의한 금융서비스거래와 外國人에 의한 금융서비스거래로 나눌 수 있으며 금융서비스제공의 場所에 따라 지점 및 현지법인 설치에 의한 현지에서의 거래와 국경을 초월한(cross-border) 거래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거래는 形態에 따라 지급수단관련 서비스, 중개/매매 서비스, 결제·청산·에치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 자문·대리 서비스 등이 있다.

지급수단관련 서비스는 수표, 여행자 수표, 현금카드, 신용카드의 발행, 자금이체 등이다. 중개/매매 서비스는 인수, 모집, 주선 등이며, 자산관리 서비스는 현금관리, 포트폴리오관리, 연금기금관리, 신탁서비스 등이다. 자문·대리 서비스는 투자연구·자문, 신용조회·분석, 합병·취득 등이다.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금융서비스거래는 실물경제,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의 개방과 함께 개방되어 개방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連繫 - 獨立 順序의 原則에 따라 經常去來 및 資本去來에 附隨된 金融 서비스去來를 먼저 개방한다. 독립적인 금융서비스거래의 경우에는 개방을 늦추되 필요하면 국내인/해외시장 - 外國人/국내시장 순서의 원칙에 따라 국내인에 의한 해외 시장에서의 금융서비스거래를 먼저 개방하고 外國人에 의한 국내시장에서의 거래는 지점 및 현지법인의 설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개방한다. 단, 相互主義 原則 때문에 국내인에 의한 해외시장에서의 금융서비스거래와 外國人에 의한 국내시장에서의 금융

[圖 II-3] 金融서비스去來의 開放順序



서비스거래는 동시에 개방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外國人에 대한 국경을 초월한 금융서비스거래의 개방은 최대한 늦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VII> 支店/現地法人 - 國境超越 順序의 原則).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의 개방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정책의 자주성 및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유지하는데 제약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서비스거래의 형태에 있어서는 자문·대리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결제·청산·예치 서비스, 지급수단관련 서비스 및 중개/매매 서비스의 개방 이전에 開放하도록 한다 (<VIII> 諮問·代理, 資產管理 서비스 - 決濟·清算·預置, 支給手段關聯, 仲介/賣買 서비스 順序의 原則). 이와 같이 金融서비스去來는 가급적 金融과 聯關성이 낮은 서비스부터 開放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에게 경쟁력이 강화될 기회를 주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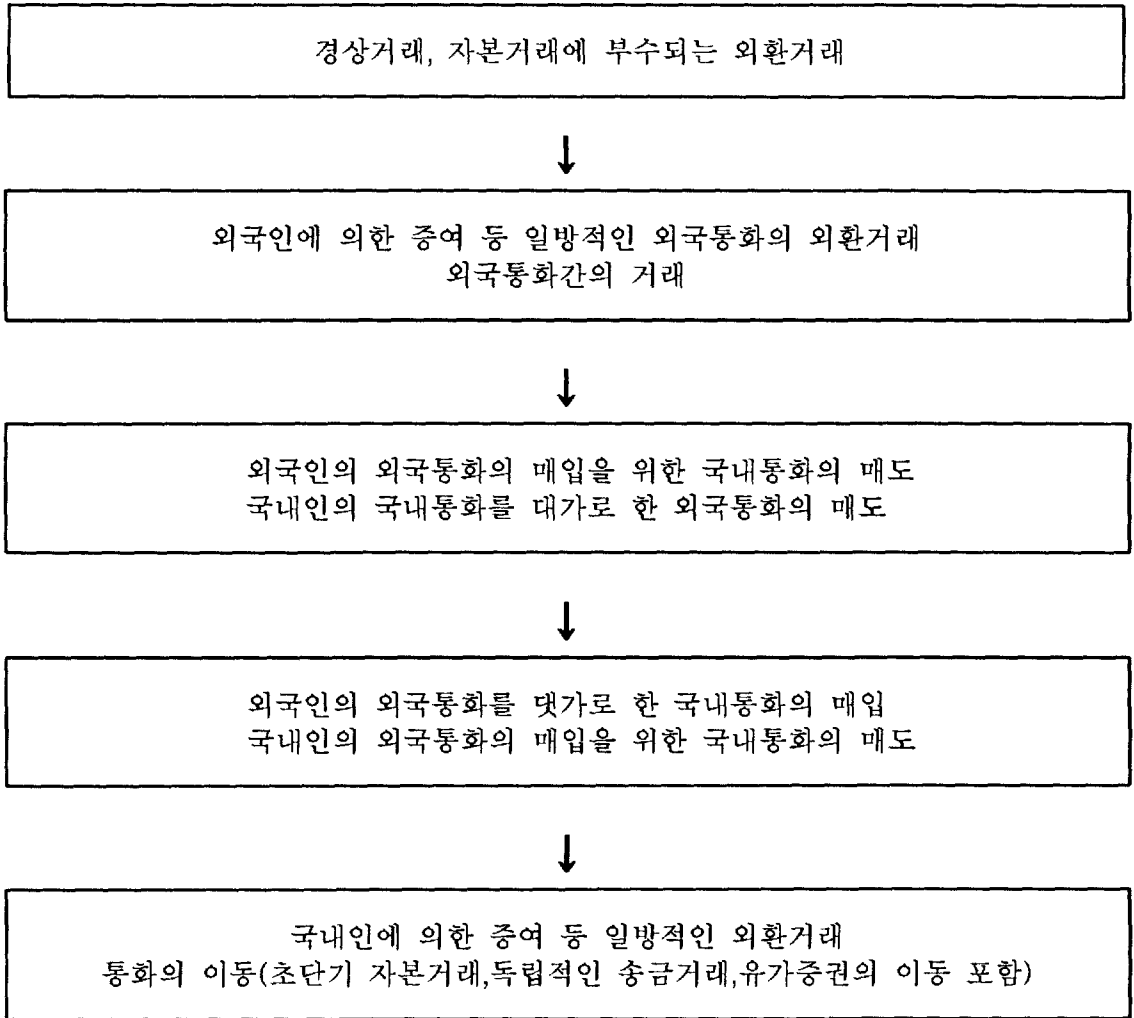
3. 外換去來([圖 II-4] 참조)

외환거래는 去來主體에 따라 국내인에 의한 거래와 外國人에 의한 거래로 나눌 수 있다. 외환거래의 形態에 따라서는 외국통화를 대가로 한 국내통화의 매입, 외국통화의 매입을 위한 국내통화의 매도, 외국통화간의 교환, 통화의 이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외환거래는 性格에 따라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에 附隨되는 거래와 독립적인 거래로 나눌 수 있다. 독립적인 거래 가운데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대가가 없는 '일방적'인 거래가 있으며 그 예로는 증여, 기증, 결혼지참금, 해외이주금, 외환보유금 등이 있다.

외환거래의 개방은 連繫 - 獨立 順序의 原則에 따라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에 附隨되는 거래를 우선 개방하도록 한다. 즉 實需要 原則에 따라 外換去來를 개방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外國人에 의한 外國通貨의 一方的인 外換去來를 개방한다. 또한 外國通貨間의 去來도 동시에 개방한다. 외국통화만의 거래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外國人의 外國通貨 買入을 위한 國內通貨의 賣渡와 國內人의 國內通貨를 대가로 한 外國通貨의 賣渡를 개방한다. 다음에는 外國人

의 外國通貨를 대가로 한 國內通貨의 買入과 國內人의 外國通貨 買入을 위한 國內通

[圖 11-4] 外換去來의 開放順序



貨의 賣渡를 개방한다 (<IX> 外國通貨 - 外國人의 國內通貨賣渡 / 國內人의 外國通貨賣渡 - 外國人의 國內通貨買入 / 國內人의 外國通貨買入 順序의 原則). 外國人의 國內通貨매도는 일반적으로 실물거래와 연계된 거래에서 外國人이 보유하게 된 원화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일 것이다. 또한 國內人의 外國通貨 매도 역시 일반적으로 실물거래와 연계된 거래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일 것이다. 즉 이 原則은 가급적 국제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外國通貨와 國內通貨간의 거래를 개방하고 본격적인 外國通貨와 國內通貨간의 거래는 늦추는 것이다. 이는 원화의 국제화를 늦게 추진함으로써 원화 환율의 불안정한 움직임을 억제하고 통화관리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國內人에 의한 증여 등 완전히 一方的인 外換去來와 通貨의 移動을 최대한 늦추어 개방한다. 또한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초단기 자본거래, 독립적인 송금거래, 유가증권의 이동 그리고 국경초월의 금융서비스거래도 최대한 늦추어 개방한다. 그 이전에는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限度를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외환거래를 개방한다.

III. 金融 및 證券市場 開放의 現況과 計劃

1. 現況

앞에서의 金融去來 分類에 따라 1993년말 현재 金融開放의 現況을 살펴보면 <附表 III-1> ~ <附表 III-6>과 같다. 금융개방의 현황으로 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金融開放의 特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금융거래 중 일부는 금지된 거래를 나열하는 금지거래 열거주의(negative list system)를 따르고 있다. 즉 금지거래 열거주의를 따른 금융거래는 거주자의 해외직접

투자, 해외금융시장에서 거주자의 증권발행, 비거주자의 국내직접투자 등으로서 대체로 실물경제에 밀접하게 연계된 資本去來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자유화된 거래를 나열하는 자유거래 열거주의(positive list system)를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있어 금융개방의 정도가 상당히 부진한 狀況이다.

둘째, 금융개방의 정도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금융서비스거래 및 외환거래에 비하여 資本去來의 開放速度가 빠르며 특히 실물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資本去來의 開放速度가 빠르다. 이와 같이 그동안 진행된 금융개방의 順序는 앞에서 우리 經濟에 적합한 것으로 제시된 開放順序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셋째, 현재의 금융개방 상태는 적어도 法的으로는 長期去來와 短期去來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주식·채권 등의 장기증권을 재정증권 등의 단기증권과 명확히 구분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거래 열거주의에 따라 정책당국의 판단에 의존하여 금융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신속히 발전하는 금융거래의 속성상 장기와 단기의 구분이 점차 퇴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와 단기의 구분이 명확한 거래가 적지 않으며 금융개방의 과정에서 장기거래의 개방이 미치는 영향은 단기거래와 매우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금융개방의 진행과정에서 신금융상품에 대한 개방이 충분히 法的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즉 신금융상품이 해외금융시장에서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實需要原則에 따라 開放되는 정도로 신금융상품의 개방이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스왑, 옵션 등의 비증권권리, 外國人전용 수익증권 등의 공동투자증권, NIF 등의 보충금융 등을 수용할 수 있는 制度를 갖추지 못한채 극히 보수적으로 開放이 진행되고 있다.

다섯째, 法的인 측면에서 금융개방을 설명하는 규정의 透明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거래의 技法과 手段이 발전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현재의 규정에 의해서는 특정 거래의 開放與否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금융거래별로 금융개방의 특징을 살펴보면, 직간접적으로 실물경제에 연계된 장단기 자본거래는 부동산과 신금융상품의 관련 거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금지거래 열거주의에 따라 비교적 빠른 속도로 開放이 진행되어 왔다(<附表 III

-1> ~ <附表 Ⅲ-2> 참조). 국내인의 金融的 動機에 의한 거래는 전반적으로 자유 거래 열거주의에 따라 제한적으로 開放이 진행되어 왔다(<附表 Ⅲ-3> 참조). 다음에 外國人에 의한 國內市場에서의 去來는 수익증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개방되어 왔으며 1992년부터는 제한적으로 주식시장에서 開放이 이루어짐으로써 여전히 대부분의 경우에 개방이 금지된 상태이다(<附表 Ⅲ-4> 참조). 금융서비스거래에 있어서도 외국 금융기관이 허가를 받아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의 開放水準에 머물러 있다(<附表 Ⅲ-5> 참조). 外換去來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정규모의 限度內에서 거래가 자유화된 정도의 金融開放이 이루어졌다(<附表 Ⅲ-6> 참조).

2. 開放計劃

앞으로 「新경제 5個年計劃(93~97)」 및 「對外開放計劃(blueprint)」에 따라 금융개방을 대폭 擴大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金融去來를 실물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거래, 실물산업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거래, 금융적 동기에 의한 거래로 나누어 개방 계획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¹⁾.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방속도가 늦은 거래인 실물산업에 간접적으로 연계된 거래와 금융적 동기에 의한 거래의 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계획이다.

가. 實物産業과 直接 연계된 去來

실물산업과 直接的으로 연계된 去來는 실물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거래이다. 실물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去來 중 상업차관, 外國人 投資企業(外投企業) 차관, 外國人 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본다.

현재 상업차관은 3년을 초과하는 1백만달러 이상의 차입시에 외자도입법에 의거한 재무부장관의 認可事項이며,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의 시설재 수입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認可되고 있다¹²⁾. 新경제 5個年計劃에 의한 상업차관의 자유화계획을 보면, 제3

11) 崔長鳳(1994, 2) 참조.

단계(1996~97년)에는 국제수지, 국내외 금리차이 등 경제여건의 성숙에 맞추어 상업차관이 허용될 계획이다(<表 Ⅲ-1> 참조). 이와 같은 計劃과 社會間接資本의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시설재 도입목적으로 상업차관이 꾸준히 許容될 것으로 전망된다.

3년 이내의 단기외화자금 차입은 방위산업용 수입물품 결제자금, 延拂輸出用 원자재 및 해외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대금, 외화획득용 시설재 수입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이며, 고도기술의 外國人 投資企業(外投企業)에 한해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차입이 허용되고 있다. 新경제 5個年計劃에 의한 外投企業借款의 단계별 자유화계획에 따라 제1단계(1993년)에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의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해 단기차입이 허용되었으며 대상기업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다. 제2단계(1994~95년)에는 外國人 投資企業의 단기차입 허용범위가 일반제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表 Ⅲ-1> 참조).

外國人 投資業種에 대해서는 금지업종 열거주의(negative list system), 자동인가제도, 신고제도 등이 활용되고 있다. 投資對象에 따라 자유업종과 제한업종으로 구분하고 投資事業에 따라 인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한 후 제한업종과 소매업 및 숙박업의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의 認可事項이며 인가대상 사업이외의 사업인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申告事項이다. 外國人 투자는 국내산업의 競爭力을 향상시킬 것이므로 국내산업의 수용현황을 감안하여 外國人 투자의 開放對象을 확대하고 投資節次를 간소화하여 外國人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外國人 직접투자는 실물거래에 直接 수반되는 자본거래로서 通貨, 換率 등에의 영향이 비교적 적어 우선적으로 자유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外國人投資家 개방 5개년 예시제」를 수립하여 이에 따라 外國人 投資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新경제 5個年計劃에 의한 外國人 직접투자의 단계별 자유화계획에 따라 제1단계(1993년)에는 원칙적으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제2단계(1994~95년)에는 개방업종이 확대되고 外國人의 투자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제3단계(1996~97년)에는 外國人 투자의 신고제도가 정착될 계획이다(<表 Ⅲ-1> 참조).

12) 현재 상업차관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은데 이는 상업차관이 與信管理의 대상이 아닌 점에도 연유한다.

정부는 해외직접투자의 對象을 産業政策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정부는 해

<表 III-1> 實物産業과 직접 연계된 去來의 自由化 計劃

商業借款	
제3단계(1996~97)	• 국제수지, 국내외금리차이 등 경제여건 성숙에 맞추어 상업 차관 허용
外投企業 借款	
제1단계(1993)	• 고도기술 수반 제조업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해 단기차입 허용 및 대상기업을 고도기술 수반 서비스업으로 확대
제2단계(1994~95)	• 外國人 投資企業의 단기차입 허용범위를 일반제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外國人 直接投資	
제1단계(1993)	• 원칙적 인가제에서 원칙적 신고제로 전환
제2단계(1994~95)	• 개방업종의 확대 및 外國人 투자절차의 대폭 간소화
제3단계(1996~97)	• 外國人 투자의 신고제도 정착
海外直接投資	
제1단계(1993)	• 해외직접투자 절차 간소화 및 투자제한 완화
제2단계(1994~95)	•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 확대
제3단계(1996~97)	• 해외직접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유화

資料: 대한민국정부, 『「新경제 5個年計劃(93~97)」經濟改革課題報告書』, 1993.7.

외직접투자 대상을 유형과 내용에 따라 장려사업, 일반사업, 제한사업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로 허가심사 및 금융지원의 방식에 차별을 두고 있다. 海外投資節次에 있어서는 5백만달러 이하는 한국은행 총재 신고수리, 5백만~1천만달러 이하는 한국은행 총재 허가, 1천만달러 초과는 해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국은행 총재 허가의 사항이다. 금융보험업자의 해외투자 또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투자는 재무부 장관의 허가사항이다. 앞으로 外國人 직접투자를 자유화하는 동일한 原則에 의하여 海外直接投資의 自由化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에서의 보호주의·지역주의의 심화, 국제수지의 적정관리, 통화의 적정관리, 국내산업구조의 개편, 기업경영의 국제화 등에 효율적으로 對應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및 자유화가 진전될 것이다. 그리고 民間企業은 自律性을 갖고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며 해외의 투자사업 및 투자지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가 추진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수지 여건에 따라 海外投資의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하면서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 및 수출증대 등의 效果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즉 投資節次를 간소화하고 投資制限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세계 지원 등 投資與件을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新경제 5個年計劃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제1단계(1993년)에는 해외직접투자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자제한이 완화되었다. 제2단계(1994~95년)에는 해외직접투자의 신고대상이 확대되며, 제3단계(1996~97년)에는 해외직접투자가 신고제로 전환되어 자유화될 계획이다(<表 III-1> 참조).

나. 實物産業과 間接 연계된 去來

實物産業과 間接적으로 연계된 去來는 실물거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이나 동시에 金融的 動機가 수반된 거래이다. 실물산업과 間接적으로 연계된 거래 중 국내 기업에 의한 해외증권발행, 개발기관의 차입 및 무역신용을 살펴본다.

현재, 납입자본금 10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이고, 3년간 누적기준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첨단기술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企業은 자본재 도입자금,

<表 III-2> 實物産業과 간접 연계된 去來의 自由化 計劃

海外 證券發行	
제1단계(1993)	• 기업의 외화증권 발행을 신고제로 전환
貿易信用	
제1단계(1993)	•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연지급수입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제2단계(1994~95)	• 연지급수입 기간의 추가 확대
제3단계(1996~97)	• 연지급수입 기간의 국제 수준화

資料: 대한민국정부, 『『新경제 5個年計劃(93~97)』, 經濟改革課題報告書』, 1993.7.

외채 조기상환, 해외 투자자금 등을 위해 CB, BW, CP 등의 모든 외화증권을 재무부 장관에의 申告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新경제 5個年計劃에 의한 해외증권발행의 自由化計劃을 보면 제1단계(1993년)에 기업의 외화증권 발행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도록 계획되었다(<表 III-2> 참조). 이에 따라 제1단계 계획은 원칙적으로는 1993년 4월부터 이미 시행중에 있다.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금리차이로 인하여 기업의 해외증권발행에 의한 資金調達需要가 급증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행정지도에 의하여 規制되고 있는 용도 및 발행자격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需要增大의 要因이 있는 반면에, 국내외 금리 차이가 점차 縮小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금리차이로 인한 해외자금수요도 점차 減少할 것으로 예상된다.

開發機關에 의한 外貨資金 借入의 경우 1년 이하는 자유, 1년 초과 중 1천만달러 미만은 재무부 장관에의 보고, 1천만달러 이상은 件別로 재무부 장관에의 사전신고사항이며, 外貨證券의 發行은 件別로 재무부 장관에의 신고사항이다. 차입된 외화자금은 外貨貸出에 직접 연계되어 있는데, 용자대상은 시설재 수입자금, 계획조선용 機資材 수입자금, 해외투자자금, 차관상환자금 등이며, 용자기간은 8년 이내이고, 용자비율은 대기업 80%, 중소기업 90%이다. 金融의 國際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행정지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기관의 차입에 대한 規制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貿易信用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延支給 輸入制度의 경우 대상품목은 실행관세율 10% 이하인 품목과 원유, 경유, 중유이다. 이때, 일반지역의 適用期間은 내수용 60일, 수출용 120일이며, 인근지역의 적용기간은 내수용, 수출용 30일이다. 관세율 인하에시계획 및 국제관행에 따른 연지급 적용기간의 확장이 예상되어 연지급수입은 꾸준히 增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지급수입은 실물산업에 수반되는 자본거래로서 經濟開放과 병행하여 우선적으로 자유화될 것이나, 국제수지 및 통화관리의 여건에 따라 段階的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新경제 5個年計劃에 따른 단계별 연지급수입의 자유화계획을 따라 제1단계(1993년)에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연지급수입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다. 제2단계(1994~95년)에는 연지급수입 기간이 추가로 확대될 계획이며, 제3단계(1996~97년)에는 연지급수입 기간이 국제 수준과 동일하게 될 계획

이다(<表 Ⅲ-2> 참조).

다. 金融的 動機에 의한 去來

금융적 동기에 의한 거래는 外國人에 의한 證券投資, 內國民(國內人)에 의한 海外證券投資 등으로서 실물거래에 수반되기보다는 비교적 금리(수익률), 환율, 자금조달 등 金融과 관련된 동기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형성된 거래이다. 다음에는 이들 금융적 동기에 의한 거래 중 주요 항목에 대하여 개방계획의 내용을 살펴본다.

1992년 1월부터 증권감독원에 投資者로 등록한 비거주자(해외영주권을 소지한 국민 포함) 및 外國人 거주자에게 개별 법령에서 주식취득을 금하지 않는 모든 上場株式을 개방하였다¹³⁾. 投資限度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전체로는 종목별로 상장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 1인당으로는 종목별로 상장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3%이다. 예외적으로 금융, 항공, 통신 등 공익사업 및 산업정책상 보호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투자자 전체의 限度가 종목별로 8%이고, 한전 및 포철의 국민주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자 전체의 限度가 종목별로 8%, 1인당의 限度는 종목별로 1%이며, 外國人 직접투자기업의 경우에는 25% 범위 내에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限度이다.

外國人에 의한 주식투자의 需要側面을 살펴보면, 外國人에 의한 주식투자수요는 충분히 커 超過需要 狀態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外國人의 주식투자규모는 국내 주식시장이 外國人에게 開放되는 정도 즉 供給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外國人 주식투자의 供給側面을 설명할 수 있는 新경제 5個年計劃에 의한 外國人 주식투자의 단계별 자유화계획을 참조하면, 제1단계(1993년)에 50% 이상 外國人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外國人의 투자한도가 폐지(당해기업 동의시)되었다. 제2단계(1994~95년)에는 外國人의 주식투자 한도가 확대되고 국내 거주 外國人은 주식투자시 내국민의 대우(1994년)를 받으며, 제3단계(1996~97년)에는 外國人의 주식투자 한도가 더욱 확대될 계획이다(<表 Ⅲ-3> 참조).

新경제 5個年計劃에 의한 債券市場의 단계별 자유화계획을 보면, 제2단계(1994~95

13) 本稿에서는 비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를 편의상 외국인으로 칭한다. 註 8) 참조.

<表 III-3> 金融的 動機에 의한 去來의 自由化 計劃

外國人 株式投資	
제1단계(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상 外國人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外國人의 투자한도 폐지(당해기업 동의시)
제2단계(1994~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國人의 주식투자 한도 확대 • 국내 거주 外國人의 주식투자시 내국민 대우(1994)
제3단계(1996~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國人의 주식투자 한도 확대
債券去來	
제2단계(1994~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의 원화채권발행 허용(1995) • 중소기업발행 전환사채에 대한 外國人의 직접투자 허용(1994) • 금리수준이 국제금리와 유사한 국공채에 대한 外國人의 발행 시장 인수 허용(1994) • 국내상장채권에 대한 外國人의 간접투자 허용(1995)
제3단계(1996~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권에 대한 外國人의 직접투자 허용(1997)
海外證券投資	
제1단계(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투자자의 범위 투자한도 확대 • 수요에 맞추어 일반투자자의 투신사를 통한 간접투자를 확대 허용
제2단계(1994~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자유화 • 일반 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허용폭 확대

資料: 대한민국정부, 『「新경제 5個年計劃(93~97)」經濟改革課題報告書』, 1993.7.

년)에는 국제기구의 원화채권발행이 허용(1995년)되며 중소기업발행 전환사채에 대한 外國人의 직접투자가 허용(1994년)될 계획이다. 또한 금리수준이 국제금리와 유사한 국공채에 대한 外國人의 발행시장 인수가 허용(1994년)되며 국내상장채권에 대한 外國人의 간접투자가 허용(1995년)될 계획이다. 제3단계(1996~97년)에는 중소기업의 무보증 장기채권에 대한 外國人의 직접투자가 허용(1997년)될 계획이다(<表 Ⅲ-3> 참조). 外國人에 대한 債券市場의 開放은 앞으로 해외자본유입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채권시장 개방계획에 의하면 채권시장의 개방이 매우 신중하게 추진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外國人의 채권투자에 의한 해외자본의 流入規模는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외 금리차이로 인하여 채권시장 개방에 대한 外國의 壓力이 높을 것이며 또한 OECD 加入을 위하여 자본거래 자유화 규약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시장의 開放은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그 동안 國內資本의 유출방지 및 外換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해외증권투자는 투자기관, 투자한도, 투자대상 등에 있어서 規制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의 開放과 均衡을 유지하고, 기업의 對外去來가 확대되면서 기업이 환율 및 금리 변동에 대한 危險을 회피할 수 있게 하고, 해외자본의 유입에 따른 通貨管理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정부는 해외증권투자에 대한 規制를 완화하고 있다. 현재 허용된 해외증권투자의 내용은 다음 <表 Ⅲ-4>와 같이 투자기관, 투자한도 및 투자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新경제 5個年計劃에 의한 해외증권투자의 단계별 자유화계획에 따라 제1단계(1993년)에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와 투자한도가 확대되었고 수요에 맞추어 일반투자자의 투신사를 통한 간접투자가 확대되어 허용되었다. 제2단계(1994~95년)에는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자유화되고 일반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허용폭이 확대될 계획이다(<表 Ⅲ-3> 참조).

<表 III-4> 海外證券投資의 規制現況

투자기관	
기관투자자	•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단자사, 연기금
해외 외화보유가 허용된 기업	• 수출입실적 1억달러 이상의 기업
일반 투자자	
투자한도	
기관투자자	•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 1억~2억달러 • 단자사, 연기금 : 5천만달러
기업	• 수출입실적의 10%, 최고 1억달러
일반투자자	• 투신사의 해외투자 수익증권에 의한 펀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며 1993년중에는 3개 투신사당 5천만달러 이내에서 허용
투자대상	• 상장증권 및 일부비상장증권(NASDAQ 등)에의 투자,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거래의 허용

IV. 資本流入의 影響과 對策¹⁴⁾

1. 影響

금융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資本의 流入이다. 남미 국가, 아시아 국가 등 금융개방을 추진해 온 모든 국가가 해외자본의 流入을 경험한 바 있다. 規制되어 온 금융거래가 開放되면서 收益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존재하게 되어 規制되었던 금융시장으로의 資本流入이 예상된다¹⁵⁾.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國內金利가 국제금리보다 높으며 성장잠재력이 높고 현재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규모의 資本流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본유입의 영향을 엄밀히 分析하고 이에 대한 對策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課題이다.

자본유입의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입된 資本이 제조업에의 투자, 기술개발 등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부문에 사용되면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유입된 資本이 소비증대를 초래하고 통화증발로 인한 物價上昇, 원貨 수요증대로 인한 원貨價値上昇에 그친다면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자본이 부족하여 해외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자본유입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예컨대,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초기 경제개발과정에서 해외자본이 성장의 중추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개방의 과정에서 유입되는 원하지 않는 해외자본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즉 원하지 않는 자본유입은 원貨價値의 上昇, 通貨의 증발 등으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악화, 인플레이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원하지 않는 資本流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본의 유입이 不安定하여 갑자기 資本의 流出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

14) 1994~97년 동안 자본유입의 구체적인 전망치와 계량화된 影響 그리고 체계적인 對策에 관해서는 崔長鳳(1994, 2)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本稿는 중요한 논쟁점만을 언급하였다.

15) 이미 국제금융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여 해외에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찾기는 힘들 것이므로 자본도피적 성격을 띤 경우 이외에는 자본유출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본의 유입도 문제이지만 급격한 資本移動도 부작용이 크다. 급격한 자본유출입은 금융시장을 교란시켜 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밖에 資本의 流入은 經常收支의 赤字를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입된 자본은 元貨價値 上昇으로 인한 수출의 감소를 초래하고 소비 및 투자 수요증대로 인한 수입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資本의 流入으로 인하여 金利의 下落이 기대되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본이 유입되어 국내 통화가 증대되면 유동성이 증가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金利의 下落을 예상할 수 있다¹⁶⁾. 그러나 자본유입이 완전히 中和(sterilization)되면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金利가 下落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通貨債 發行에 의하여 中和될 경우에는 金利가 上昇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실질금리는 원칙적으로 자본의 投資收益率 및 잠재성장력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자본유입에 의하여 실질금리가 下落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 對策

資本流入에 대한 對策은 자본유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입된 해외자본이 元貨價値 上昇이나 物價上昇을 초래하기 보다는 投資增大를 초래하여 經濟成長의 원천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정책수단, 환율정책수단, 재정정책수단 등 각종 정책수단간의 調和로운 結合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본유입의 규모가 클 경우 단일정책에 의해서는 큰 부작용이 경제내에 원만히 흡수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본유입으로 인한 통화증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通貨債 發行에 의한 中和政策(sterilization)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 政策은 외국통화를 元貨가 아닌 通貨債로 바꾸는 것이므로 通貨債의 공급이 증대되어 金利의 上昇이 초래될 수 있다. 金利上昇이 초래되는 한 資本流入의 主要因은 해소되지 못하게 되고 中和政策에 대한 상쇄효

16)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금리가 인상할 요인이 발생한다.

과(offset effect)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욱이 通貨債 發行을 통해 中和하는 데는 借換發行의 부담과 利子の 부담으로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1993년의 경우 통화채 발행 5조 3천억원, 상환 3조 5천억원으로 純增發行이 1조 9천억원이었으며, 이자부담이 3조 5천억원(발행잔액: 29조 3천억원)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유입을 通貨債 發行에 의한 中和政策만으로 흡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해외자본유입의 영향을 환율이 모두 흡수하기에도 원貨價值 上昇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클 것이다. 자본유입의 예상규모가 커 원貨價值 上昇의 壓力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높은 원貨價值 上昇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환율의 변동폭을 확대하여 일시에 원貨價值 上昇을 초래하는 등의 政策은 큰 제약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단일정책은 자본유입을 원만히 흡수하기 어려우므로 結合政策(policy mix)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자본유입에 대한 結合政策으로서 資本流入을 財政黑字, 民間信用增加 그리고 원貨價值 上昇의 조합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財政黑字, 民間信用增加 및 원貨價值 上昇은 모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정책금융의 축소, 사회간접자본의 증대 등으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며 民間信用增加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원貨價值 上昇은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둘 組合은 피하기 어려운 선택으로 판단된다.

財政의 黑字에 의하여 민간의 과소비가 억제될 수 있다. 건전한 소비행태가 이루어져야 성장의 원동력인 投資의 증대가 기대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정책적 금융지원과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금융기관 창구를 통하여 유입된 자본의 효율적 활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통화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유입된 資本을 금융기관이 효율적으로 仲介함으로써 生産的인 부분에 공급하는 것이다. 즉 財政의 역할을 資本流入期間 동안에는 民間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급격한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능한 범위의 中和政策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특히 중앙은행이 보유하게 되는 外貨를 민간의 원貨와 스왑(swap)함으로써 자본유입을 中和하는 스왑정책은 有效한 수단이 될 것이다. 건전한 소비와 통화증발 억제의 분위기 속에서 投資增大를 위한 최소한 民間信用增大는 成長을 초래할 것이며 우려할 만한 物價上昇이나 金利上昇을 유

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원貨價値 上昇을 허용하여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物價安定을 도모한다. 현재의 원貨價値 上昇은 예상되는 미래의 원貨價値 上昇을 낮추게 되어 자본유입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資本流入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經常收支 赤字는 감내할 수 밖에 없다. 유입된 자본은 輸入需要의 증대를 초래하거나 원貨價値 上昇으로 輸出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資本流入의 시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經常收支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資本流入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 原因을 제거함으로써 자본유입의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유입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대책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의 다른 부분에 부작용 없이 그 原因이 용이하게 제거될 수 있다면 그 원인의 제거가 가장 바람직한 對策일 것이다. 그러나 주요 원인이 국내외 금리차이, 높은 잠재성장력 등의 구조적인 데 있다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結合政策에 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結合政策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입의 부작용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 경제내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될 경우에는 직간접적인 資本統制(capital control) 政策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資本統制 政策의 수단은 유입된 자본에 課稅하는 수단 또는 無利子의 예치금을 강요하는 수단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무이자 예치금을 강요하는 수단은 유입자본의 費用을 상승시켜 유입의 동기를 소멸시킨다. 즉 이 들 수단은 자본에 부과되는 일종의 關稅이다. 필요한 경우 국내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關稅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도 보다 직접적으로 자본유입을 統制하는 수단도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資本統制政策은 실제로 호주, 칠레 등 많은 국가에서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그 效果에 있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短期的으로는 자본유입을 억제할 수 있었지만 회피할 수 있는 길이 곧 발견되어 통제수단은 더욱 強化될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에는 통제정책은 철회된 것이 일반적이었다. 단, 위기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資本統制政策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附表 III-1>

國內人에 의한 해외시장에서의 직간접적으로 實物經濟에 연계된 長短期 資本去來

항 목	현 황
<p>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완전소유기업, 자회사 또는 지사의 설립 및 확장과 기존기업 소유권의 완전취득 2. 신설 또는 기존기업에의 참여 3. 5년 이상의 대부 	<p>다음의 경우는 금지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금액이 5백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 금융·보험업자의 해외투자, 또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투자 3) 경제적 효율성 및 대외관계를 이유로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투자가 제한되는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 4)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설치
<p>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부동산 신축, 매수 및 매도의 거래</p>	<p>다음의 경우는 자유화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외점포의 설치인가를 받은 외국환은행이 점포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 정부기관에 의한 취득 4) 거주자가 인정된 사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 취득으로서 취득금액이 5백만달러이하인 경우. 단, 이 경우에는 한은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p>해외 장기금융시장에서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주식 및 채권의 발행</p>	<p>국내증권의 해외발행은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후 30일 이내에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됨.</p>
<p>해외 단기금융시장에서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단기 유가증권 및 기타증서의 발행</p>	<p>국내증권의 해외발행은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후 30일 이내에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됨.</p>

<附表 III-1>의 계속

항 목	현 황
<p>거주자의 해외시장에서 단 기금융증서를 통한 차입</p>	<p>다음의 경우는 자유화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주자의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장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가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등 증서의 매매에 의한 경우 3) 비거주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매각할 경우
<p>해외금융시장에서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양도성증서 및 비증권권리의 발행</p>	<p>다음의 경우는 자유화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거주자가 실수요범위내에서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선물중개업무 지정기관을 통하여 해외금융선물거래소와 외국환관리법에 규정된 금융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에 규정된 금융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p>거주자의 해외에서의 양도 성증서 및 비증권권리의 매 수, 매도 및 기타자산과의 교환</p>	<p>다음의 경우는 자유화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거주자가 실수요범위내에서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선물중개업무 지정기관을 통하여 해외금융선물거래소와 외국환관리법에 규정된 금융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에 규정된 금융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p>해외증권시장에서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공동투자증 권의 발행</p>	<p>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익증권의 경우는 자유화됨.</p>
<p>국제상거래 또는 국제서비 스제공과 직접 관련된 신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아래 방법에 의한 신용공여로서 외국환관리규정이 정하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자유화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연지급수입 ii) 분할지급수입

<附表 III-1>의 계속

항 목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ii) 팩토링에 의한 수입 iv)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 v) 수출선수금·수출착수금 영수증에 의한 수입 vi) 용역제공 완료후(개시전) 6월초과 1년 이내에 용역대가를 지급(영수)하는 경우 <p>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아래 방법에 의한 신용공여로서 외국환관리규정이 정하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자유화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수입국의 중앙정부, 중앙은행 또는 우량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거나 수출보험에 부보된 경우의 연불수출 ii)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자금에 의한 연불수출 iii) 팩토링을 이용한 결제기간 3년 이내인 수출 iv) 수출국의 중앙정부, 중앙은행 또는 우량금융기업이 환급보증을 하는 경우의 수입대금 사전지급수입 v) 용역제공 완료후(개시전) 6월초과 1년 이내에 용역대가를 영수(또는 지급)하는 경우
<p>담보, 보증 및 보충금융</p>	<p>1) 거주자의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대출에 관한 담보로 비거주자가 외화표시보증을 하는 경우는 자유화됨.</p> <p>2) 다음의 경우는 자유화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채권자인 비거주자와 채무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의 인정된거래에 관하여 일정요건 충족시 채권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보증 ii) 외국의 시설대여회사와 국내의 실수요자간의 인정된 시설대여계약에 대한 시설대여회사의 외화표시보증 iii) 거주자의 수출,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한 비거주자의 보증으로 인한 당해 비거주자의 채무이행에 대한 보증

<附表 III-1>의 계속

항 목	현 황
	3)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 또는 투자신탁회사가 외화증권 국제인수단에 참여하여 제공하는 보충금융은 자유화됨.
예금거래	다음의 경우는 자유화됨. 1) 정부의 재외공관 및 그 근무자, 가족에 의한 거래 2) 해외건설 또는 용역회사에 의한 일정 한도내의 거래 3) 외국인 거주자에 의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로 취득한 자금의 거래 4) 차관자금의 해외사용과 관련된 거래 5) 해외금융선물거래, 해외상품선물거래에 필요한 경우 6) 국민인 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던 계정에 의한 거래로서 2천달러이내인 경우 7) 해외에서의 증권발행 대금의 예치 8) 종합무역상사, 수출입업자 등의 수출입에 필요한 일정한도내의 거래 9) 현지금융과 관련된 거래 10) 기관투자가, 수익증권 수탁회사의 해외투자활동과 관련된 거래 11)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거래 12) 해외체재중의 일상생활비와 관련된 거래

<附表 III-2> 外國人에 의한 國內市場에서의 直接的인 長期 實物投資

항 목	현 황
<p>비거주자의 國內 직접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完全소유기업, 자회사 또는 지사의 설립 및 확장과 기존기업 소유권의 완전취득 2. 신설 또는 기존기업에의 참여 3. 5년 이상의 대부 	<p>다음의 경우는 금지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간행물(신문포함) 발간사업, 방송업(뉴스제 공업, 라디오, TV, 유선방송업 포함), 광업, 항공운송업, 통신사업, 무선, 부동산 2) 수산업, 석유정제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게 되는 투자 3) 國內에 등록된 항공기 소유기업에 대한 주식이나 지분의 1/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투자 4) 國內에 등록된 선박을 소유하는 기업에 대한 주식의 1/2 또는 의결권의 2/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투자 5) 5년 이상의 대부 6)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한 투자 7) 외국기업(은행 및 금융서비스, 증권, 보험서비스 기업 포함)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점, 대리점, 사무소 설치
<p>비거주자에 의한 國內 부동산 신축, 매수 및 매도의 거래</p>	<p>다음 경우는 자유화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거주자가 본인·친족·종업원 거주용으로 國內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2) 국민인 비거주자가 國內에 있는 부동산 또는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 비거주자가 國內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國內 부동산 또는 관련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동산 거래

<附表 III-3> 국내인의 순수한 金融的 動機에 의한 거래

항 목	현 황
<p>거주자에 의한 해외시장에서의 주식 및 채권 거래</p>	<p>다음의 경우는 자유화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투자자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상장예정인 증권,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 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특정금액이하의 매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에 의한 1억달러이하의 매수. 단, 외국에서 증권업허가를 받은 증권사, 전회계년도말 총자산이 5조원을 초과하는 보험사, 국제수익증권 등을 발행하여 국제업무를 취급하는 투신사의 매수 한도는 2억달러임. ii) 단자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운용 관리법인에 의한 5천만달러이하의 매수 iii) 종합무역상사 및 전년도 수출입실적이 1억 달러이상인 者에 의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와 1억달러중 적은 금액이하의 매수 2)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혼합수익증권, 해외투자수익증권의 수탁회사에 의한 외화증권 매수 ii)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의 재매입 iii) 거주자의 외국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한 외화증권 취득 iv) 국내기업이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주식취득으로서 1만달러내인 경우 v)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의한 외국본사의 주식취득 3) 해외매수가 인정된 증권의 매도

<附表 III-3>의 계속

항 목	현 황
<p>거주자에 의한 단기금융증권의 매수, 매도 및 대부 거래</p>	<p>다음의 경우는 자유화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투자자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상장에정인 증권,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특정금액이하의 매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에 의한 1억달러이하의 매수. 단, 외국에서 증권업허가를 받은 증권사, 전회계년도말 총자산이 5조원을 초과하는 보험사, 국제수익증권 등을 발행하여 국제업무를 취급하는 투신사의 매수 한도는 2억달러임. ii) 단자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운용 관리법인에 의한 5천만달러이하의 매수 iii) 종합무역상사 및 전년도 수출입실적이 1억 달러이상인者に 의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와 1억달러중 적은 금액이하의 매수 2)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혼합수익증권, 해외투자수익증권의 수탁회사에 의한 매수 ii)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의 재매입 iii) 거주자의 외국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한 매수 3) 해외매수가 인정된 증권 매도 4) 외국금융기관에 예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으로 다른 외화통화표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p>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공동투자증권의 매수 및 매도</p>	<p>다음의 경우는 자유화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투자자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상장에정인 증권을 편입하는 공동투자증권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특정금액이하의 거래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에 의한 1억달러이하의 매수. 단, 외국에서 증권업허가를 받

<附表 III-3>의 계속

항 목	현 황
	<p>은 증권사, 전회계연도말 총자산이 5조원을 초과하는 보험사, 국제수익증권 등을 발행하여 국제업무를 취급하는 투신사의 매수한도는 2억달러임.</p> <p>ii) 단자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운용 관리법인에 의한 5천만달러이하의 매수</p> <p>iii) 종합무역상사 및 전년도 수출입실적이 1억 달러이상인 者에 의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와 1억달러중 적은 금액이하의 매수</p> <p>2) 혼합수익증권, 해외투자수익증권의 수탁회사에 의한 매수</p> <p>3) 거주자의 외국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한 매수</p>
<p>국제상거래 또는 국제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된 신용</p>	<p>외국환은행에 의한 다음의 대외 외화표시보증은 자유화됨.</p> <p>1) 보증을 의뢰하는 비거주자가 동 보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 영수통화로 표시된 대외 지급수단, 외화증권 또는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예치한 경우</p> <p>2)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의뢰에 의한 보증으로서 당해 금융기관과 설정한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경우</p> <p>3) 보증의뢰인이 당해국가가 전액 출자한 국영기업인 경우</p> <p>4) 보증의뢰인이 국제적 등급평정기관에서 우량 기업으로 평정받은 자(BBB 이상)인 경우</p>
<p>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p>	<p>1) 다음의 경우는 자유화됨.</p> <p>i) 외국환은행이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 1년 이하의 조건에 의한 외화자금 차입할 경우</p> <p>ii) 외국환은행이 1천만달러미만의 외화자금을 차입할 경우</p> <p>iii)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거주자, 원양어업자, 외항운송업자, 해외건설 및 해외지점이 외국에서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화자금을 차입할 경우</p>

<附表 III-3>의 계속

항 목	현 황
	<p>iv)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특정한 기간내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할 경우</p> <p>2) 외국환은행이 제공하는 2천만달러미만의 신용 및 대부는 자유화됨.</p>
예금거래	<p>다음의 경우는 자유화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의 재외공관 및 그 근무자, 가족에 의한 거래 2) 해외건설 또는 용역회사에 의한 일정 한도내의 거래 3) 외국인 거주자에 의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로 취득한 자금의 거래 4) 차관자금의 해외사용과 관련된 거래 5) 해외금융선물거래, 해외상품선물거래에 필요한 경우 6) 국민인 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던 계정에 의한 거래로서 2천달러이내인 경우 7) 해외에서의 증권발행 대금의 예치 8) 종합무역상사, 수출입업자 등의 수출입에 필요한 일정한도내의 거래 9) 현지금융과 관련된 거래 10) 기관투자가, 수익증권 수탁회사의 해외투자활동과 관련된 거래 11)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거래 12) 해외체재중의 일상생활비와 관련된 거래

<附表 III-4> 外國人에 의한 國內市場에서의 去來

항 목	현 황
외국증권의 국내 장기금융시장에서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주식 및 채권의 발행	금지됨.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시장에서의 주식 및 채권 거래	<p>다음의 경우는 자유화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상장주식의 종목별 외국인 1인당 3%(국민주의 경우 1%), 외국인 전체로는 10%(국민주의 경우 8%)를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의 취득 2)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외국인투자 전용회사를 통한 국내증권의 매수 3)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된 수익증권의 매수를 통한 국내주식에 관한 권리취득 4)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예탁증서 등의 주식전환,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청구 등의 절차에 의한 국내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5) 비거주자가 국내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 근무하는 국민인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주식을 비거주자가 당해 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7) 외국금융기관이 한국은행,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민인 거주자로부터 원화 표시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국내 단기금융시장에서 사모 또는 공모를 통한 단기유가증권 및 기타증서의 발행	금지됨.

<附表 III-4>의 계속

항 목	현 황
<p>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시장에서의 단기금융증권의 매수/매도 및 대부/차입 거래</p>	<p>1) 다음의 경우는 자유화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외국투자 전용회사를 통한 매수 ii)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된 수익증권을 통한 국내증권 관련 권리취득 iii) 외국금융기관이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증권취득 iv)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민인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貨표시증권 또는 관련 권리취득 <p>2) 다음의 경우는 자유화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거주자의 물품수출과 관련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장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비거주자가 매입하는 경우 ii) 비거주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p>국내금융시장에서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양도성증서 및 비증권권리의 발행</p>	<p>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통화간의 장외 금융선물거래(통화옵션, 이자율옵션, 선도금리계약, 스왑금융거래)를 통한 발행은 자유화됨.</p>
<p>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양도성증서 및 비증권권리의 매수, 매도 및 기타자산과의 교환</p>	<p>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통화간의 장외 금융선물거래(통화옵션, 이자율옵션, 선도금리계약, 스왑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는 자유화됨.</p>
<p>국내증권시장에서 사모 또는 공모에 의한 공동투자증권의 발행</p>	<p>금지됨.</p>
<p>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공동투자증권의 매수 및 매도</p>	<p>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내에서 발행된 혼합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자유화됨.</p>

<附表 III-5> 金融서비스 去來

항 목	현 황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금지됨.
원수(元受)보험(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이외)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는 비거주 보험업자에 대한 원수보험은 금지됨.
국제교역상품관련 보험	수출해상적하보험 계약은 자유화됨.
생명보험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는 비거주 보험업자에 대한 생명보험은 금지됨.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음을 충족한 경우 자유화됨. 1) 원화표시 재보험 관련계정 설정 2) 항공보험 이외의 보험물건은 국내보험회사에 우선 출재 3) 해외로부터 보험요율 구득은 대한재보험(주)를 통함
외국보험업자의 지점 및 대리인의 사무소설치 및 영업조건	인·허가 사항임.
지급서비스: 지급수단(수표, 여행자수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의 발행 및 사용. 단, 신용인출을 위한 것은 제외) 자금이체서비스(우편, 전화, 텔렉스, 전신, 팩스, 전자연결장치 또는 현금이체(지로)에 의한 자금이체 포함)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점 또는 대리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금지됨.
은행 및 투자 서비스(증권, 공동투자증권, 기타 양도성증서 및 비증권권리, 신용공여 및 대부, 담보, 보증 및 보충금융, 유동성자금 및 외환관련) 인수업무(신규금융자산의 모집 및 배분) 중개/매매서비스(유동성자금 및 외환을 포함하는 금융자산	다음 경우에 금지됨. 1) 국내에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지 않은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서비스제공 2) 인정된 자본거래에 직접 수반되지 않는 거주자의 해외에서의 금융관련 서비스이용

<附表 III-5>의 계속

항 목	현 황
의 매입, 매도 또는 교환을 위한 증개 및 시장조성) 금융시장정보, 의사교환 및 실행제도	
결제, 청산과 관리 및 에치서 비스(증권, 공동투자증권, 기 타 양도성증서 및 비증권권 리, 유동성자금 및 외환관련) 결제 및 청산제도 관리·에치서비스	인정된 자본거래에 직접 수반되지 않는 거주자에 의한 해외에서의 서비스이용은 금지됨.
자산관리 현금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연금기금관리 자산보유 신탁서비스	다음의 경우는 금지됨. 1)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국내지점을 갖지 않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서비스 제공 2) 인정된 자본거래에 직접 수반되지 않는 서비스 의 거주자에 의한 해외이용
자문 및 대리서비스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연구 및 자문(주식평가기 관 포함) 합병, 취득, 재편, 경영권 인 수, 벤처캐피탈	비거주자에 의해 국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금 지됨.
요금,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	원인이 되는 거래금액의 10% 또는 5만달러를 초 과하는 경우는 금지됨.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비거주투자자의 지점, 대리인등의 사무소설치 및 영 업조건	인·허가 사항임.

<附表 III-6> 外換去來

항 목	현 황
외국통화간 교환	<p>다음에 의한 해외에서의 외국통화간 교환은 자유화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에 의한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2) 거주자가 외국금융기관에 예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대외지급 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증여 및 기증	<p>다음의 경우는 자유화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국제기구, 국제단체 또는 외국정부등에 대한 의연금, 기부금 2)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교육·문화·예술·종교관련 단체 등에 대한 증여 3)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친척, 친지에 대한 축의금, 조의금 또는 생활보조금 등의 증여성 지급
결혼지참금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금지됨.
비거주자의 외국통화 매입을 위한 국내통화의 매도	<p>다음 경우는 자유화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인된거래를 통한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내, 또는 500달러이내인 경우 2) 외국환관리규정이 인정하는 자에 의한 실수요 범위내의 선물환거래
거주자의 국내통화 매입을 위한 외국통화의 매도	금지됨.
비거주자의 외국통화를 대가로 한 국내통화의 매입	외국환관리규정이 인정하는 자에 의한 실수요 범위내의 선물환거래는 자유화됨.
거주자의 국내통화를 대가로 한 외국통화의 매입	금지됨.

<附表 III-6>의 계속

항 목	현 황
상속 및 유증	금지됨.
이민자에 의한 원거주지국에서의 채무변제	변제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금지됨.
해외이주자의 자산	다음 경우는 자유화됨. 1) 세대주에 대해서는 10만달러, 세대원 1인당 5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이주정착비 2) 3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투자사업비
상금	자유화됨.
비거주 근로자의 저축	자유화됨.

<參考文獻>

- 大韓民國 政府, 『新經濟 5個年計劃(93~97) - 參與와 創意로 새로운 跳躍을 -, 1993. 7.
- 李元欽·金塔晉, 『日本の 資本自由化 - 推進過程과 示唆點』, 럭키금성經濟研究所, 1992. 3.
- 財務部 國際金融局, 『解說: OECD自由化 規約(資本移動 및 經常貿易外 去來)』, 1994. 2.
- 崔長鳳, 「開放經濟下에서의 金融政策 - 90年代 後半期の 效率性 增進을 위한 制度的 課題 -, 『開放化·國際化에 따른 財政·金融政策 方向 - 새로운 役割變化와 制度的 補完 -, 韓國租稅研究院, 1994. 9, pp. 113~180.
- 崔長鳳, 『資本去來 自由化에 따른 效率的 通貨 및 資本流出入 管理』, 研究報告書 94-01, 韓國租稅研究院, 1994. 2.
- Bhandari, J. S., "Trade Reform under Partial Currency Convertibility," *IMF Staff Papers*, Vol. 36, No. 2, June 1989, pp. 494~513.
- Blanchard, Olivier J., "A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Macroeconomic Fluctuat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9, No. 5, December 1989, pp. 1146~1164.
- Burkett, Paul and Richard Lotspeich, "Finanacial Liberalization, Development, and Marketization: A Review of McKinnon's the Order of Economic Liberalization: Financial Control i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1991),"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35, No. 1, Spring 1993, pp. 59~84.
- Calvo, G. A., L. Leiderman and C. Reinhart, "The Capital Inflows Problem: Concepts and Issues," *IMF Paper on Policy Analysis and Assessment*, July 1993.

- Cottani, Joaquin and Domingo Cavallo, "Financial Reform and Liberalization," *EDI Series in Economic Development*, 1993, pp. 38~63.
- Edwards, S., "The Order of Liberalization of the External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Essays in International Finance*, No. 156, Princeton: Department of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1984.
- Edwards, S. and S. van Wijnbergen, "The Welfare Effects of Trade and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27, No. 1, Feb. 1986, pp. 141~148.
- Mathieson, Donald J. and Liliana Rojas-Suárez, "Liberalization of the Capital Account, Experiences and Issues," *IMF Occasional Paper*, No. 103, March 1993.
- Reisen, Helmut and Héiène Yèches, "Time-Varying Estimates on the Openness of the Capital Account in Korea and Taiwan," *OECD Technical Papers*, No. 42, 1991.
- Sell, F. L., "True Financial Opening Up: The Analysi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a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The Developing Economics*, Vol. 32, No. 1, Mar. 1994. pp. 13~36.